

# 미제사건 피의자 검거 가능지수의 도입방안 연구

《研究陣》

연구위원 : 이 순 래 (원 광 대 학 교 경 찰 행 정 학 과)

연구위원 :

연구지도위원 : 백

형

조

연구관 :



##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과제 .....	121
제1절 연구배경 .....	121
제2절 연구과제 .....	123
제2장 문헌연구 .....	126
제1절 수사착수와 미제사건 처리에 관한 관련법규 .....	126
1. 수사착수에 관한 관련법규 .....	126
2. 미제사건의 처리에 관한 관련법규 .....	132
제2절 활용가능한 수사기초자료 .....	134
제3절 검거가능지수 예측방법 .....	140
1. 예측방법의 연혁 .....	140
2. 미국경찰의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	148
3. 예측방법의 종류 .....	152
제3장 연구방법론 .....	153
제1절 자료수집 .....	153
제2절 측정항목과 측정항목의 분포 .....	154
1. 범죄발생후 인지시간 .....	154
2. 피의자 관련정보 .....	155
3. 범죄수법 .....	157
4. 범죄의 장소적·시간적 관련 .....	158
5. 피해자 관련정보 .....	161
6. 검거 관련정보 .....	162

제3절 자료분석방법 .....	164
<b>제4장 연구결과</b> .....	166
제1절 피의자검거 유관요인의 판별 .....	166
1. 범죄발생후 인지시간 .....	166
2. 피의자 관련정보 .....	167
3. 범죄수법 .....	168
4. 범죄의 장소적·시간적 관련 .....	169
5. 피해자 관련정보 .....	171
제2절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평가 .....	173
1.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	173
2. 범죄유형별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	177
제3절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 .....	180
1.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 .....	181
2. 범죄유형별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 .....	184
제4절 수사개시를 위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정 .....	187
제5절 피의자 검거가능기간의 추정 .....	190
제6절 수사부서의 업무평가모형 개발 .....	191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194
제1절 요약 .....	195
제2절 정책제언 .....	200
<b>참 고 문 헌</b> .....	204

## 표 차 례

<표 2-1>	재비행예측표 .....	146
<표 2-2>	등급별 예측확률 .....	147
<표 2-3>	일반범죄에 대한 피의자 검거 가능지수 .....	149
<표 2-4>	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피의자검거 가능지수 .....	150
<표 2-5>	강도사건에 대한 「피의자검거 해결지수」 .....	151
<표 3-1>	사건발생후 인지기간 .....	155
<표 3-2>	피의자수의 확인 .....	156
<표 3-3>	피의자의 연령확인 .....	157
<표 3-4>	범 죄 수 법 .....	158
<표 3-5>	범 행 장 소 .....	159
<표 3-6>	범 행 시 간 .....	160
<표 3-7>	범 행 요 일 .....	160
<표 3-8>	피 해 자 수 .....	161
<표 3-9>	피 해 양 상 .....	161
<표 3-10>	검 거 여 부 .....	163
<표 3-11>	검 거 기 간 .....	163
<표 3-12>	범 죄 유 형 .....	164
<표 4-1>	범죄발생후 인지기간과 검거여부의 교차분석 .....	167
<표 4-2>	피의자수 확인과 검거여부의 교차분석 .....	168
<표 4-3>	범죄수법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	168
<표 4-4>	범행장소와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	169
<표 4-5>	범행시간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	170
<표 4-6>	범행요일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	170
<표 4-7>	피해자수와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	171
<표 4-8>	피해양상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	172
<표 4-9>	수사항목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 .....	176

<표 4-10> 수사항목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 (절도범죄) .....	178
<표 4-11> 수사항목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 (폭력범죄) .....	179
<표 4-12>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	181
<표 4-13> 표준화회귀계수와 수정가중치에 의한 검거가능지수와 실제검거율과의 관계 .....	183
<표 4-14>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의 합치도 .....	184
<표 4-15>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절도범죄) .....	185
<표 4-16>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의 합치도 (절도범죄) .....	185
<표 4-17>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폭력범죄) .....	186
<표 4-18>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의 합치도 (폭력범죄) .....	187
<표 4-19> 검거가능지수별 검거확률 .....	189
<표 4-20> 검거가능지수별 평균 검거기간 .....	191
<표 4-21> 검거가능점수와 검거가능기간에 업무평가 .....	192

##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과제

### 제1절 연구배경

수사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sup>1)</sup> 즉, 수사관 수사경찰이 범인을 색출·검거하고 관련증거들을 발견하고 수집·보전함으로써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경찰은 당연히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고 진범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다수의 미제사건이 발생한다.

수사미제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기술의 한계, 수사자료자체의 한계, 자료감식의 한계, 인적 자원의 한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sup>2)</sup> 먼저 수사기술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기술이 미흡하거나 혹은 수사에 필요한 특수장비가 부족하거나 장비가 있더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에 수사미제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로 수사자료의 측면에서 현장조사 당시에 수집한 수사기초자료가 범인특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가 없거나 또는 무의미한 자료라면 수사경찰은 그들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세번째로 자료감식의 측면에서 감정 가능범위를 벗어난 자료에 대해서는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장비나 감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 제공되지 못하거나, 혹은 자료분류나 표본조사의 미비로 감식결과를 수사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수사활동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네번째로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물증이 없고 참고인도 확보되지 못했다든지, 이들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모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도 수사미제사건이 유발되는 이유일 것이다.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1, pp. 183-184.

2) 성광호, 범죄수사의 이론과 실제, 진리탐구, 1995, pp. 52-54.

이러한 면에서 수사미제사건의 감소를 위해서는 1)사법경찰관의 수사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수사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2)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사기초자료의 수집, 3) 자료감식기술의 개발이나 표본자료의 축적, 4) 참고인 확보나 진술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 다양한 방면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제사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도입하여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거가능지수(Solvability Index)란 피의자 검거에 유용한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하고 이를 총합한 수치이다. 미국경찰의 경우에 검거가능지수를 활용하여 수사활동의 효율화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경찰은 범죄유형별로 피의자 검거에 유용한 수사항목을 정하고 이들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수집된 수사항목에 이들 가중치를 적용하여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한다<sup>3)</sup>. 이를 통하여 미국경찰은 피의자 검거가 가능한 사건들에 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인력을 배분하거나, 검거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인력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거가능지수는 범죄신고를 한 피해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sup>4)</sup> 피해자가 제공한 사건관련자료가 불충분하여 검거가능성이 낮았을 때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차후 보완자료가 획득되면 유보되었던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 미제사건의 발생이나 수사지체에 따른 피해자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검거가능지수는 수사경찰 개인의 근무평거나 부서별 업무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 검거가능지수는 사건별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시하는 수치이기 때

3) 이백철외, 경찰범죄통계의 신뢰성제고 방안, 치안연구소, 1995, p. 68.

4) Miller, Anatomy of a citizen's complaint, Citizen's Advocate, 1996, p. 1-4.

이외에 검거가능지수에 관한 논의는 Swope, Ross E., Community Involvement in Reducing Property Crime, [Http://www.hendonpub.com/lawandorder/magazine/june98/communityinvolvement.html.htm](http://www.hendonpub.com/lawandorder/magazine/june98/communityinvolvement.html.htm): St. Clair County Sheriff's Department, [Http://www.sheriff.co.stclair.us/invest.htm](http://www.sheriff.co.stclair.us/invest.htm): Greenville Police Department, Management Study, [Http://www.ci.greenville.tx.us/pdsummary.html](http://www.ci.greenville.tx.us/pdsummary.html): The City of Leominster, Massachusetts, Police Department Study, [Http://ci.leominster.ma.us/polstdy.htm](http://ci.leominster.ma.us/polstdy.htm)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문에 사건해결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검거가능지수와 이를 기초로 추정하는 검거기대기간은 각 경찰서나 수사경찰 개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현행 평가방법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미국경찰은 범죄유형에 대한 지수별 검거기대기간을 설정하고 담당수사경찰이 기대기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에 담당형사를 문책하거나 피의자 검거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제2절 연구과제

본 연구는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그 접근 방법은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주요 수사항목을 파악하고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1. 수사단서항목들의 통합관리방법 모색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피해자, 범죄사실, 범죄수법, 목격자나 참고인 등에 관한 수사단서항목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사건보고서(Incidence Report)에 이러한 수사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어 검거가능지수와 같은 과학적 수사방법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활용가능한 수사단서항목들이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별개의 목적을 지닌 발생통계원표, 피해신고서,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등의 서식에 분산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검거가능지수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는 범죄관련 기초자료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5) 김준호·이동원,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 41-43.

## 2-2. 수사단서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평가

각각의 범죄유형에 유용한 수사단서들을 문헌연구와 수사경험이 많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분류하고 경험적 자료를 대상으로 이러한 단서들과 피의자 검거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각의 단서들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 2-3.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개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수사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산출모형을 개발한다. 산출모형은 범죄유형별로 피의자 검거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단서항목<sup>6)</sup>들을 구분하고, 이들에 부여할 가중치(피의자 검거에 기여하는 수준)들을 도표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실무에서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 2-4. 수사개시를 위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정

미국경찰의 경우에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총합이 10이 넘을 경우의 범죄사건을 피의자검거가 가능한 사건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총합이 10미만일 때는 피의자검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착수가 지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구조와 수사단서항목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설정한 10점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사개시를 위한 적절한 검거가능지수의 범위를 추정한다.

## 2-5. 피의자 검거가능기간의 추정

검거가능지수별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검거기간을

6) 범죄유형별 주요수사단서에 대해서는, Kinnee, Kevin B., Practical Investigation Technique, CRC press, 1994; Myren, Richard A & Carol Henderson Carcia, Inves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Fac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9 참조.

컴퓨터로 처리하여 “피의자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한다.

## 2-6. 수사부서의 업무평가모형 개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와 “피의자 검거가능기간”은 사건해결의 난이도와 평균적 검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별로 검거현황을 통계처리할 경우에 이는 각각의 경찰서들의 업무성과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범죄유형과 “피의자 검거 가능지수”별로 기대기간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가점(plus point)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점(minus point)을 부여함으로써 수사부서의 업무성과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 제2장 문헌연구

범죄사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조기에 수집되면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범죄의 흔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나 혹은 인위적으로 훼손되므로 범죄현장에 최초 입장한 경찰관이나 피해신고 접수시에 사건에 관한 상세한 자료의 수집은 미제사건을 감소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사건의 경우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묘사, 잠재지문의 발견, 피해자 제압의 방법, 용의자 관련 사항 등이 사건해결에 매우 유용한 수사기초자료로 언급되고 있다.<sup>7)</sup> 따라서 사건에 관한 주요기초자료가 수사착수시에 수집되어 활용된다면 사건해결의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부서의 책임자는 기초자료의 수집 정도에 따른 검거가능지수를 통하여 수사착수여부를 판단하거나 검거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인력을 낭비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미제사건 검거가능지수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사착수나 미제사건의 처리에 관한 법규와 검거가능지수 산출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사기초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사착수와 미제사건 처리를 규정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이후 미제사건의 처리방법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사기초자료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수사착수와 미제사건 처리에 관한 관련법규

#### 1-1. 수사착수에 관한 관련법규

우리나라에서 수사착수를 규율하는 원칙은 범죄혐의의 존재와 범죄인지의 필요성

7) Bozza, Charles M., *Criminal Investigation*, Nelson-Hall: Chicago, 1978, pp. 238-231.

이다.<sup>8)</sup> 즉 사법경찰관이 범죄정보를 갖고 있거나 관내에 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수사비례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만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수사착수의 원칙 중에서 범죄혐의의 존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순수 자유재량적인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혐의를 주관적으로 인정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형구(1985:102)는 범죄혐의를 주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근거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인지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였다. 수사착수의 두 번째 원칙은 범죄인지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인지의 필요성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흔히 범죄의 가벌성 유무가 거론된다.<sup>9)</sup> 예컨대 길바닥에 떨어진 1원짜리 동전을 줍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이 죄질과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는 수사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인지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수사착수의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단서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수사착수의 단서는 자율적 수사단서와 타율적 수사단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사단서의 종류에 따라 수사가 착수되는 과정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자율적 수사단서와 타율적 수사단서의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sup>10)</sup>

## 1) 자율적 수사단서

### ㉠ 현행범인의 발견 체포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또한 범인으로 호

8) 백형구,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육법사, 1985, p. 102.

9) 백형구, 앞의 책, p. 103.

10) 전용득, 수사기법강해, 세종출판사, 1996. p. 45.

칭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혐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을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는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이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또 현행범인을 체포한 현장에서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범인의 경우에 즉각적인 수사의 착수를 규정하고 있다.

#### ㉠ 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불심검문 결과 특정한 범죄에 관하여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가 착수된다.

#### ㉡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 ㉢ 풍설 또는 세평 등 사회현상

수사기관은 신문, 방송의 보도 기타 출판물의 기사, 밀고, 풍설 등의 내용 가운데 범죄에 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수사가 착수된다.

#### ㉣ 타사건수사중 범죄발견

이미 입건되어 수사를 하는 가운데 피의자 또는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가 역시

수사착수의 단서가 된다.

㉠ 가택수사중 타사건의 증거물 발견

㉡ 변사체 검시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이다. 검시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착수된다.

2) 타율적 수사단서

㉢ 고 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범죄사실의 신고이므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가 없으며 고소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을 때에 수사가 착수된다. 고소가 제기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경찰서장이 1개월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주는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 고 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 자 수

자수란 범죄사실이 아직 수사기관에 탐지되기 전에 범인이 자진하여 자기가 범인이라

는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수의 절차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범인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타인을 시켜서 자기의 범죄를 신고시킬 수 있으며 자수하러 왔을 때에 수사가 착수된다.

### ㉔ 진 정

### ㉕ 피해신고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수사기관은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해신고는 피해신고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해신고서에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 보충함으로써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착수된다.

수사단서의 종류에 따라 수사착수의 과정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수사단서가 고소, 고발, 자수인 경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접수와 더불어 수사가 착수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수사단서에 대해서는 내사단계를 거쳐 수사가 착수된다. 내사란 입건의 전단계로서 내사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내사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간단한 사건이나 내사를 거치지 않아도 범죄운판이 드러나는 사건은 내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sup>11)</sup>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고, 입건할 가치와 필요가 있을 때는 범죄인지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입건할 가치와 필요가 없을 때는 내사를 종결하게 된다. 내사사건의 수사착수에 관해서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제57호,1991.7.3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73조(범죄의 내사) ①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

11) 성광호, 앞의 책, p. 44.

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병자하여 막연히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전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범죄인지보고서) ① 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착수에 관한 판단) 수사의 착수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과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의 사정을 판단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법규는 범죄혐의의 존부와 범죄인지의 필요성 등 규범적 측면만을 강조할 뿐이며 수사의 현실성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고 범죄인지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현실적 여건상 수사 착수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집에서 도난피해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도둑이 들었는지, 무엇을 가져갔는지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신고를 했을

때에 범죄혐의나 범죄인지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수사기초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수사착수가 무의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규들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사착수를 강제하는 것으로 수사의 현실적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의 존재와 범죄인지의 필요성과 같은 규범적 요인과 더불어 수사의 현실적 제약부분을 고려하여 수사착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미제사건의 처리에 관한 관련법규

수사착수 이후에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미제사건의 처리는 고소·고발 사건, 중요사건, 도난 기타 피해신고 사건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범죄수사규칙제66조, 제194조, 제249조). 먼저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 중에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된다.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경찰서장이 다시 1개월 범위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다음으로 중요범죄의 경우는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경찰청훈령 제54호(1991.7.31)는 중요사건으로 살인사건, 강도사건, 강간사건, 방화사건, 중요 상해치사상 사건, 조직폭력사건, 약취유인 또는 약취강도사건, 구인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사건, 기타 지방경찰청이 지정하는 중요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범죄사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후 2개월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이를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에 기재하고 계속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 기입정리하여야 한다. 미검거 중요범죄에 대한 계속수사는 연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수사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미검거 또는 미체포 사건으로 검사에 송치한 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등 장차 참고가 될 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중요범죄 미제사건으로 편철·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중요범죄가 아닌 도난 기타 피

해신고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거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미검거로 검사에 송치하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제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매우 모호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인 판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미검거 중요범죄의 경우에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별수사를 생략하고 소극적인 계속수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난 기타 피해신고 사건의 경우에도 “앞으로도 검거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미제사건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역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검거가능지수는 앞서 수사의 착수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미제사건의 처리단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 1개월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못했을 때에 검거가능지수의 제시는 수사기간의 연장에 위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수사착수 이후로 여러 단서들을 수집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거가능한 점수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이는 수사기간의 연장요청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미검거 중요사건의 경우도 해결가능지수의 산출은 검거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판별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중요범죄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검거가능지수에 따라 계속수사의 우선순위를 가늠하거나 혹은 수사인력의 배당에 유용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도난 기타 피해신고 등의 사건에서도 검거가능지수는 검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 객관적 기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수사진행 후에 그때까지 수집한 수사단서들을 통하여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한 결과 그것이 검거가능범위에 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수사의 현실적 제약에 의해 검거불가능으로 판별할 수 있다.

## 제2절 활용가능한 수사기초자료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자료들이 기록수집되고 있다. 실제 수사부서에서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기록수집하는 자료의 종류는 130여종에 이르고 있다.<sup>12)</sup> 그러나 13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사관련자료들의 대부분은 수사가 착수된 이후에 대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수사착수단계에서 작성되는 자료는 빈약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도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데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신고서의 경우는 수사착수단계에서 작성되어 사건해결 가능성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신고사건이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해신고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건에 국한되기 때문에, 피해신고서를 이용해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한다면 이는 심각한 대표성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피해신고서는 신고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전산처리할 수 있는 코드화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같은 자료에 입각하여 검거가능성 산출모형을 개발하고 예측에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법원지는 전산처리할 수 있는 코드화가 되어 있고 범행수법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법원지는 검거된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또한 강도, 절도, 사기, 위조변조사범, 약취유인, 공갈사범 등의 수법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내용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검거가능성 예측에는 이용할 수 없다. 피해통보표는 전산코드화가 되어 있고 범죄수법이나 피해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분류항목에 의해 작성된다. 그러나 검거가능성 예측에 주요항목인 범행의 일시관계, 범행의 장소관계, 목격자 및 참고인관계 등에 관한 항목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작성되도록 규정하여, 실무부서에서 그 작성빈도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고 활용하는 데에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발생통계원표이다. 발생통계원표는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sup>13)</sup>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12) 경찰청, 경찰훈령·예규집(형사), pp. 485-489.

가장 대표적인 범죄자료이다. 발생통계원표는 고소·고발과 인지사건 등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수사기관에서 즉시 작성하고 원표작성 즉일로 컴퓨터 온라인으로 전산입력되는 자료이다.<sup>14)</sup> 과거 발생통계원표는 파출소에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경우에 파출소 근무경찰이 작성하여 관할서로 이첩하였으나 이후 발생통계원표 기재항목의 정확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사건담당 경찰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통계원표를 실제 작성하는 작성자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원표의 82% 가량은 담당형사들이 작성하고 나머지 18% 가량은 통계전담형사, 의무경찰, 동료경찰, 조무원 또는 일반경찰 등이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이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담당형사가 작성한 발생통계원표는 원표작성 즉일로 컴퓨터 온라인으로 전산입력되고 원표 자체는 작성부서에서 1년간 보존하게 된다.

발생통계원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작성되고 또한 수사담당자가 직접 작성되므로, 검거가능성의 개발이나 활용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초자료이다.<sup>16)</sup> 이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발생통계원표를 검거가능지수의 운용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원표의 기재항목이 지극히 미흡하다. 현행의 발생통계원표는 모두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표의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작성연월일, 2) 발생지수사기관, 3) 본표번호, 4) 수사사건부번호, 5) 관계검거사건표번호, 6) 죄명, 7) 발생년월일시, 8) 인지년월일시, 9) 발생부터 인지까지 시간,

13) 검거통계원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죄명, 발생 및 검거일시, 수법,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시간, 검거인원 및 공범여부, 피의자 조별,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공용물, 검거단서, 장물,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검거자 등 29개 항목이다. 피의자통계원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죄명, 피의자 직업, 연령, 성별, 학력, 종교, 생활정도, 가족상황, 전과, 여죄, 재범상황, 마약 작성제, 범죄원인, 발생지, 발생 및 검거연월일, 피의자 조치사항, 처분죄명, 처분결과 등 43개 항목이다.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작성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 첨부되며 서울의 경우는 지청 및 지검 단위로, 지방의 경우는 지검 단위로 취합되어 대검찰청에 전달된다.

14) 이백철외, 앞의 책, p. 30.

15) 이백철외, 앞의 책, p. 33.

16) 이외에도, 발생통계원표는 수사지침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생통계원표에 범죄 유형별로 주요수사단서가 제시되어 있다면, 담당수사관은 현장입장이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할 때에 이러한 단서들에 주목함으로써 사건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0) 범죄수법(강도의 종류, 절도의 종류, 사기의 종류), 11) 발생일 특수사정, 12) 범행시 일기, 13) 수사단서(현행범, 신고, 미신고), 14) 미신고이유, 15) 피해자(성별, 연령), 16) 피해자 피해시 상황(취침중, 일하는 중, 부재중 등), 17) 발생지(도시 및 도시이외 구분), 18) 발생장소, 19) 재산피해상황(피해정도, 품명별 피해액), 20) 신체피해상황(피해구분, 상해정도), 21) 작성자, 22) 전산입력일, 23) 전산입력자 등 23개 항목이다. 항목들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자료관리를 위한 목적이거나 단순 통계산출에 관한 항목들이며 수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발생부터 인지까지 시간, 피해자, 피해상황 등 몇몇 항목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발생통계원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최초 기록이며 담당수사관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작성하지만 이를 수사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항목구성이 지극히 미흡하다. 반면에 미국경찰이 작성하는 사건보고서는 범죄발생통계의 원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부록 1은 우리나라의 발생통계원표에 해당하는 미국경찰이 사용하는 사건보고서(Incidence Report)의 양식이다. 미국의 사건보고서는 크게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sup>17)</sup>

- (1)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범죄명, 발생일시, 기수·미수 여부, 알콜 및 약물 사용유무, 침입절도의 침입회수 및 침입방법, 발생장소 등을 기재
- (2)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분: 피해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해자 유형, 피해자의 인종 민족 성별 연령, 피해자수, 거주여부, 폭행 및 살인의 상황, 신체피해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기입
- (3) 재산피해부분 : 재산피해의 유형별로 품명과 양, 특징, 가치 및 복구일시를 기입
- (4) 용의자부분 : 범죄자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인종, 몸무게, 신장, 시력, 복장 등을 기재
- (5) 피검자부분 : 피검자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인종, 생년월일, 민족, 거주여부,

17) 김준호 이동원, 앞의 책, p. 44.

수지무기종류, 신장 몸무게 시력 머리색깔, 검거일시, 검거방법, 18세 미만자 처분 등을 기재

(6) 목격자부분 :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7) 기타 : 범죄상황, 자동차등록, 범인의 동작 등 주요수사단서의 기재

사건보고서는 발생한 범죄의 최초인지자(정복경찰, 순찰요원)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황적 요소들과 수사의 단서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담당수사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들 양식을 인계한다. 인계받은 수사담당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현장주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첨부하여 사건보고서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 사건보고서는 범죄발생에 대한 통계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수사부서 책임자는 컴퓨터에 입력된 사건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건보고서에 해결지수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결가능지수를 산출하고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착수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수사담당자는 수사착수의 지시를 받게 된다.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사항과 수사상 수집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보관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부서의 책임자는 사건담당자가 얼마나 신의성실을 다하여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누락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사건담당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지시한다.

수사착수단계에서 활용되는 미국의 사건보고서와 우리나라의 수사관련자료들을 비교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수사관련자료들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수사관련자료의 종류가 많아 자료작성을 위해 수사경찰에 부과하는 업무가 과중하다. 즉 피해신고서,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수사경찰이 작성해야 할 수사관련서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목이 서류별로 거듭 기재되어야 하므로 수사경찰에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 2) 활용가치가 없는 항목이 많다.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 “작성자”와 “전산입력자” 항목들은 활용가치가 불분명하며 또한 “발생부터 인지까지 시간”은 “범죄발생연월일시”와 “인지연월일시”를 컴퓨터의 산술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3)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내용이 빈곤하다.

발생통계원표는 미국의 사건보고서와 같은 수사기초자료이지만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이 충분하지 않다.

4) 기초자료가 부정확하고 항목누락이 많으며 작성이 기피된다.

작성자에 대한 교육 불충분, 인사이동, 복잡한 양식에 의해 항목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또한 불성실한 기재와 확인관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 원표가 전체의 22%에서 33%에 이를 정도로 항목누락이 많다.<sup>18)</sup> 특히 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는 수사부서에서 사건송치에 필요한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기피되는 사례가 적지만, 수법원지나 피해통보표의 경우는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73호)에 의해 규율되어 작성 자체가 기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생통계원표를 이용하여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사착수나 미제사건의 처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1) 발생통계원표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들은 범죄양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시관계에 관한 단서, 범행장소 단서, 피해자에 관한 단서, 피의자에 관한 단서, 목격자 혹은 참고인 관계에 관한 단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일시관계에 관한 단서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범행발각일

18) 이백철외, 앞의 책, p. 35.

19) Bozza, 앞의 책, p. 5.

시와 발각된 후의 상황, 범행당시의 기상상황, 범행일이 특수일이었는지의 여부, 기타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수집은 범행일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범행장소에 관한 단서란 범죄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교통상황, 가옥 또는 범죄현장에 근접한 장소의 물건과 그 상황, 범죄현장에 있는 기구, 기타 물품의 상황, 현장방실의 위치 및 범행중심점의 상황, 기타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의 수집은 범죄사실의 증명 뿐만 아니라 범행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인가 타살인가 등을 밝힐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피해자에 관한 단서란 범인과의 응대나 피해 전의 상황, 피해시에 있어서의 격투 또는 저항자세, 상해의 부위나 정도 그리고 피해금품의 종별 수량 피해금액 등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살된 경우 사체의 위치와 상황 유형 기타 상황, 피해자의 신원이나 범인의 신원 등을 종합연결시킬 수 있는 참고사항 등을 지칭한다.

피의자에 관한 단서란 현장 침입지점이나 침입수단 그리고 침입로 및 도주경로 및 도주방법, 피의자의 수와 성별,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범죄실행 상황, 범행동기,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가의 여부와 범죄현장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기타 특이한 언동, 흉기의 종류 형상 가해방법 가해상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이상황 또는 참고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수집했을 때에 피의자의 특징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목격자 혹은 참고인 관계에 관한 단서란 목격자의 유무와 진술, 참고인의 유무 및 진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수집은 범인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제사건의 처리과정에 검거가능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발생통계원표의 구성항목을 수정하여 일시관계, 범행장소,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혹은 참고인 등에 대한 상세한 항목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이 수사단위부서나 개인에 설치되어야 하고, 발생통계원표 작성자인 담당형사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전산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발생통계원표는 담당형사가 작성하고 이를 각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합하여 통계담당자에게 교부한 후에 통계담당자가 전산입력하고 있다. 작성자와 전산입력자의 분리는 검거가능지수를 하고자 했을 때에 수사진척도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부기사항이 입력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수사착수 이후에 담당형사는 현장관찰,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수사단서들을 수집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원표작성과 입력이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담당형사가 수사진척에 따라 새로이 수집된 단서들을 추가하거나 이전에 잘못 기록한 단서들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하여 담당형사가 직접 경찰청의 메인컴퓨터에 근거리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담당형사는 새로이 단서가 수집되면 이전의 원표를 검색해 추가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제사건의 처리를 위해 검거가능지수가 필요할 때에 담당형사나 수사책임자는 근거리통신망을 통하여 최종수정된 원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 제3절 검거가능지수 예측방법

검거가능지수의 예측은 미래에 있을 검거여부를 추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범죄예측 방법으로부터 발전하였다. 다음에서는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측방법의 연혁, 예측방법의 종류, 예측방법의 한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 3-1. 예측방법의 연혁

범죄예측의 경우에 1923년 워너(Warner)가 범죄예측을 시도한 이래 여러 학자들이

개인의 차후 범행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다.<sup>20)</sup> 워너가 범죄예측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까닭은 당시 교정시설에서 활용하였던 가석방심사기준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하여 워너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교도소를 대상으로 수형자들이 가석방되기 전에 조사했던 항목들과 가석방 성공여부와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당시에 활용되었던 가석방 기준들과 비교하였다. 비교했을 때에 가석방 성공유무와 밀접한 것으로 판별된 항목들과 가석방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워너는 가석방기준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성될 것을 주장하였다.

1928년에 들어 버지스(Burgess)<sup>21)</sup>는 경험표(experience table)라 불렀던 예측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예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버지스는 미국 일리노이 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수형자들에게 공통된 요인 21가지를 추출하고 이를 통계분석하여 가석방 성공가능성 즉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 않을 확률에 관한 예측표를 작성하였다. 버지스가 예측표 작성에 활용한 요인은 범죄의 성질, 공범자의 수, 국적, 양친의 상황, 결혼상태, 범죄자 유형, 소속집단 유형, 송치한 지역, 지역의 크기, 인근의 유형, 체포 당시의 주거 상태, 판사나 검사의 의견서, 형의 경감유무, 선고형, 복역 기간, 과거 범죄경력, 직업경험, 수형기간중 징벌유무, 연령, 지능연령, 정신의학적 진단 등이었다. 버지스는 21개 요인들 중에서 같은 범죄내에 가석방을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가 혹은 높은가에 따라 각 요인들에 +1, 0, -1 등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예측표를 구성하였다. 이같이 각 요인들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버지스의 예측표 구성법은 흔히 실점부여방식이라고 불리운다.

이후 예측부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글룩(Gluek)부부<sup>22)</sup>이다. 1950년에 들어 글룩

20) 박상기 · 손동권 ·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 613.

21) Burgess, E.W. "Factors determining success or failure on parole", in A.A. Bruce et al.(ed), The Workings of the Indeterminate-Sentence Law and the Parole System in Illinois, Springfield.

22) Glueck, S. & E. Glueck,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 195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부부는 500명의 비행소년과 500명의 정상소년들을 대상으로 약 300개 정도의 요인을 중심으로 예측표를 작성하였다. 300개의 요인들 중에서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을 확연히 구별지우는 내용들은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의 결합도 등이었다. 글룩부부가 조기예측표를 구성한 방법은 이들 5개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비행소년의 비율을 예측점수로 환산하고 5개 요인에 대한 총예측점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글룩부부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훈육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기분대로’인 경우에 비행소년의 비율이 71.8%가량이었다. 반면에 훈육이 ‘확고하며 친절한’ 경우에 그 비율은 9.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만일 어떤 소년의 경우에 아버지의 훈육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기분대로’이면 그 소년에게는 71.8점이라는 비행예측점수가 부여되고 다른 소년의 경우에 아버지의 훈육이 ‘확고하여 친절하면’ 그 소년에게는 9.3점의 예측점수가 부여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다섯 가지 항목의 예측점수를 합산하여 총예측점수를 구하였다. 총예측점수는 적게는 116점에서 많게는 414점이었으며, 점수는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을 확연하게 구분하였다. 3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89%가량이었고, 반면에 200점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이 비행소년이 될 가능성은 8%에 불과하였다. 이같이 글룩부부는 요인들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요 예측요인을 선정하고 그 점수를 합산함으로써 가중실점방식이라고 불리운다.

글룩부부의 예측법은 영국에도 소개되어 1955년에 맨하임(Mannheim)과 윌킨스(Wilkins)<sup>23)</sup>는 소년원 퇴원자 382명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재범예측표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음주벽, 벌금형의 경력, 교도소 또는 소년원 입원경력, 보호관찰 경력, 양친이나 편친과 동거하지 않음, 공장지대 거주, 한 직장에서 최장근무기간 등 모두 7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범예측표를 구성하였다.

예측의 초기 연구는 버지스식의 실점부여방법이다. 글룩식의 가중실점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의 범죄자가 장래에 얼마나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를 예견하는데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가석방 직후 1주일째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과 5년이 지난 후에 범죄를

23) Mannheim, H. & L.T.Wilkins, Prediction Models in Relation to Bortal Training, 1955,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버지스나 글룩은 이를 동일한 재범사례로 취급하지만 실제 두 사례가 교정정책의 성과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차후 범죄의 확률 뿐만 아니라 그 시점까지도 예측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재범확률과 재범시점까지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 위트(Witte)와 쉬미트(Schmitt)<sup>24</sup>이다. 이들은 생존분석<sup>25</sup>이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출소한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수감되는 시기의 분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두 집단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번째 연구집단은 1977년 7월 1일에서 1978년 6월 30일까지 출소한 범죄자 9,457명이었으며 두번째 연구집단은 1979년 7월 1일에서 1980년 6월 30일까지 출소한 사람들로 9,679명이었다. 위트와 쉬미트는 이 두 집단을 다시 추정표본(estimation sample)과 확인표본(validation sample)으로 구분하고 추정표본에 의해 구성된 예측결과가 확인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예측요인으로 수감기간, 나이, 과거 수감경험, 교도소내에서의 규칙위반의 수, 학력, 인종, 성별, 알콜중독 여부, 약물사용여부, 결혼상태, 가석출소여부, 교도작업여부, 범죄의 심각성, 대인범죄 여부, 재산범죄여부 등 모두 15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의 경험이 있거나, 과거 수감경험이 많거나, 수감기간이 길고,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젊은 남자일수록 교도소 출소후에 빠른 시일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룩부부의 범죄예측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측하고자 하는 몇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비행소년문제를 실제 관리하는 실무가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먼저 1963년에 권순영은 법원에서 심판중인 소년 중에서 51명을 무작위추출하여 글룩부부의 예측표와 로르샤하(Rorschach)검사를 활용하

24) Witte, A.D. & P. Schmidt, "An analysis of Recidivism, Using the Truncated Lognormal Distribution", 1977, Applied Statistics, pp. 302-311.

25)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여 예측표를 구성하였다.<sup>26)</sup> 김기두<sup>27)</sup>는 1963년 3월부터 1964년 3월까지 소년교도소 재소자 100명과 일반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약 100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비교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조기예측표와 불량소년 식별도를 작성하였다. 이때 예측요인으로 사용한 항목들은 어머니의 감독, 실부모의 결혼생활, 가족의 결합도, 학교에 대한 태도, 태학, 가출경험, 교우의 연령 등이었다. 이 연구결과 조기예측표의 적중률이 88.3%에 달할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

재범예측과 재범예측표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연구는 1976년에 광주교도소에서 수행한 “소년원생의 재비행 예측에 관한 연구”이다.<sup>28)</sup>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년범들은 2,300여명이었고, 사회항목 200개와 성격 및 심리항목 290개 등 모두 490여개의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통계처리를 한 결과 재비행예측표 구성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명된 것들은 가출경험, 태학경험, 문신경험 등 22개의 사회항목과 13개 성격항목이었다. 항목별로 재비행자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가중치실점을 계산하여 예측표를 구성하였을 때 22개 사회항목의 예측률은 92.7%이었고, 13개 성격항목의 예측률은 80.1%로 매우 높은 예측률이었다. 광주소년원의 연구는 2,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연구대상자로 하고, 예측항목의 선정과 논리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후 재비행예측표를 만들고자 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에 실시된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의 연구도 재비행예측표를 구성하는 데에 두 단계를 거쳤다.<sup>29)</sup> 모두 1,002명을 대상으로 했던 이 연구에서 첫 번째 단계는 예측항목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서 실점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예측항목의 선정은 광주소년원과 같이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42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실점의 부여는 글록식의 실점

26) 이상안, 범죄심리학, 박영사, 1994, p. 427.

27) 김기두, 한국소년범죄연구, 박영사, 1967.

28) 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재비행 예측에 관한 연구, 1976.

29) 이병기·노성호, 앞의 책, pp. 40-43.

부여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항목별로 재비행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비율에 따라 실점을 부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예측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측항목들의 실점을 합산하여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재비행집단과 그렇지 않은 소년간의 백분율로 환산하여 예측확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비행예측표와 등급별 예측확률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전체 56개에 걸쳐 조사된 항목들 중에서 제1차 선정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별된 예측항목은 교육수준, 음주경험, 경찰단속, 친구 유무, 아버지의 훈육방법 등 19개 항목이었다.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항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생존분석에 의한 2차 선정을 하였을 때에 6개의 항목이 최종선정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재범시기를 예측하였을 때에 재범기간이 정확하게 예측된 것은 247사례로 46.4%의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는 재범확률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재범예측방식을 개발하였다. 과거의 연구들이 항목별 실점을 계산하고 이를 등급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 연구는 재범예측 방정식에 대상소년의 특성을 대입하여 예측표준화점수를 구하고 이를 환산표에 대조함으로써 손쉽게 재범확률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1> 재비행예측표

항 목	실 점	항 목	실 점
1. 비행명 : 절도 독극물, 향정 등	3 4	19. 퇴학 : 자주	4
2. 입소시 연령 : 16세 이하	3	20. 학업성취도 : 하위권	2
3. 첫 비행시 연령 : 16세 이하	3	21. 비행시 직업 : 무직	3
4. 비행력 : 1회 2회 이상	2 4	22. 봉급사용처 : 가계비 보조	2
5. 비행동기 : 용돈·유흥비 마련, 허욕심 : 가정빈곤, 가출, 교사, 교우불량, 자기 과시, 호기심	2 1	23. 용돈월액수 : 1만원 미만	3
6. 부 직업 : 영세상인, 운전원, 선원 : 무직 : 직공 막노동	4 3 2	24. 용돈소비처 : 유흥비	4
7. 모 직업 : 영세상인 : 직공, 막노동, 파출부 : 종업원, 공원	4 2 1	25. 여가장소 : 유흥지, 우범지	2
8. 가족수입원 : 형제	4	26. 여 가 : 유흥장	2
9. 경제적 수준 : 극빈	4	27. 친구연령 : 연상	5
10. 가정문제 : 갈등, 부모덕, 애정결핍 : 결손, 빈곤, 훈육결함	3 1	28. 비행력친구 : 3인 이상	2
11. 가출회수 : 1회 2회 이상	2 4	29. 무위도식 친구 : 1-2인 3인 이상	1 4
12. 가출이유 : 교우유인 가정문제	4 3	30. 우두머리 친구 : 있음	4
13. 최초 가출시연령 : 15세 이하	3	31. 음주시작연령 : 15세 이하	4
14. 성장지 : 빈민가 상가, 유흥가	3 4	32. 음주정도 : 소주 1-2홉 이내 2홉 이상	1 4
15. 학력 : 퇴학	2	33. 흡연시작연령 : 15세 이하	3
16. 중퇴, 미진학 이유 : 학력 흥미상실, 성적부진 학교생활 불량 및 비행사건	1 3	34. 흡연정도 : 6개-10개 11개 이상	1 4
17. 수학년수 : 8년 이하	3	35. 문신, 자상유무 : 있음	2
18. 재학시 불량행위 : 퇴학 싸움, 절취, 갈취 교칙 위반 등	2 3 1	36. 성경험최초연령 : 15세 이하	3
		37. MMPI F척도, 55점 이상	2
		38. MMPI 척도3, 57점 이상	2
		39. MMPI 척도4, 57점 이상 68점 이상	2 1
		40. MMPI 척도6, 55점 이상 66점 이상	2 1
		41. MMPI 척도8, 55점 이상	2
		42. IQ 104점 이하	2
		<b>총 점</b>	

주 : 이병기·노성호,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 47

&lt;표 2-2&gt; 등급별 예측확률

총 실점 등급	무 재 비 행 자		재 비 행 자		계	
	빈 도	%	빈 도	%	빈 도	%
15점 이하	67	95.71	3	4.29	70	100
16~30	153	77.66	44	22.34	197	100
31~55	146	38.22	236	61.78	382	100
56~70	22	16.18	114	83.82	136	100
71점 이상	0	0.0	40	100.00	40	100
계	338		437		825	

주 : 이병기 · 노성호, 앞의 책, p. 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 개발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z = & - .234 + .282 * (\text{입소범죄명 1}) + .605 * (\text{입소범죄명 2}) + \\
 & .022 * (\text{입소범죄명 3}) - .689 * (\text{입소범죄명 4}) - .227 * (\text{교육수준}) + \\
 & .298 * (\text{가출}) + .603 * (\text{흡연}) + .705 * (\text{과거범죄}) - .462 * (\text{훈육방법 1}) \\
 & + .306 * (\text{훈육방법 3})
 \end{aligned}$$

여기서 입소범죄명 1은 절도범죄, 입소범죄명 2는 폭력행위, 입소범죄명 3은 강도, 입소범죄명 4는 강간을 뜻한다. 그리고 훈육방법 1은 아버지의 훈육이 확고하고 친절한 경우, 훈육방법 2는 훈육이 과엄한 경우, 훈육방법 3은 훈육이 방임형인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소년의 입소범죄명과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따라 해당항목은 1의 값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항목들은 0의 값을 취한다. Z는 예측표준화점수 (standardized score for prediction)이며 이를 환산표에 대조하면 재범확률을 구할 수 있다.

### 3-2. 미국경찰의 피의자 검거가능지수<sup>30)</sup>

미국 경찰은 지금까지의 범죄예측분야에서 연구된 예측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개발하여 수사실무에서 여러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방법은 1) 주요항목의 선정 2) 검거에 미치는 주요항목의 가중치 판별 3) 검거가능지수 계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제 수사실무에서 검거가능지수의 계산은 사건발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보고서(Crime Report)상에 나타난 항목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에 사건보고서는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정복경찰에 의해서 작성되고, 이를 이첩받은 사건 담당형사가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건발생을 수사부서 책임자에게 컴퓨터상으로 보고한다. 그후 수사부서 책임자는 이 보고서를 참조하여 피의자검거 가능지수를 산출한다.

다음 <표 2-3>에서 <표 2-5>의 피의자검거 가능지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시카고주, 뉴저지주, 오레곤주 등 5개 주에서 각각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게재한 것이다. 다음 <표 2-3>은 일반적 범죄에 대한 피의자검거 해결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범죄신고자가 피의자의 차의 특징을 알거나, 특별한 범죄수법을 신고했을 경우에 피의자검거 가능지수는 “피의자의 차의 특징을 안다” 2.0 + “특별한 범죄수법을 사용했다” 4.0을 합산하여 6.0으로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검거가 가능한 10점 미만이기 때문에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개시를 유보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사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음 <표 2-4>는 절도죄에 관한 피의자 점검 해결지수의 예시이다. 미국의 경우 절도범죄는 그 피해액에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30) 이백철외, 앞의 책(재인용), pp. 68-71.

&lt;표 2-3&gt; 일반범죄에 대한 피의자 검거 가능지수

정 보 요 인	비 중 요 인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다	기재 불필요
피의자의 안면을 안다.	10.0
피의자의 성명을 안다.	10.0
피의자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특징을 안다.	6.1
피의자의 차를 압수했다.	7.0
피의자의 차의 특징을 안다.	2.0
피의자 사회적 평판을 들었다.	1.0
피의자나 자동차에 관한 말을 들었다.	2.4
특별한 범죄수법을 사용했다.	4.0
분실된 장물은 찾을 수 있다.	1.0
여러 증인들이 있다.	6.1
<p><b>지 시 요 함</b></p> <p>① 각 해당되는 내용이 '범죄통계원표'에 있을 때 지수부여          ② 부여된 지수를 합산하여 10 이상일 때, 조사에 착수한다.</p>	

예를 들면 LA의 경우 단일 절도범죄가 그 피해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일정액 이상의 경우에도 <표 2-4>에서와 같은 정보요인과 비중요인을 고려하여 「피의자검거 가능지수」가 10이 넘지 않으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표 2-4> 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피의자검거 가능지수

정 보 요 인		비 중 요 인
범죄 발생시간부터 인지까지의 시간	1시간 이내	5
	1~12시간 사이	1
	12~24시간 사이	0.3
	24시간 이상	0
범인에 대한 증인이 있음.		7
범인의 인상을 안다.		1
범인의 지문을 채취 했음.		7
범인의 성명을 안다.		9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안다.		0.1
기 타		0
<p><b>지 시 요 함</b></p> <p>1. 각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가 있을시 지수부여                  2. 부여된 지수를 합산                  3. 지수 총합이 10이상 일때, 조사에 착수</p>		

다음 <표 2-5>는 강도범죄에 대한 「피의자검거 해결지수」에 대한 예시이다.

<표 2-5> 강도사건에 대한 「피의자검거 해결지수」

정 보 요 인		비 중 요 인
범인의 성명을 안다.		10
범인을 안다.		10
범인을 전에 본 일이 있다.		10
범죄분석관이 증거를 해명했다.		10
범인이 달아난 장소를 안다.		10
범인의 인적사항이 증인들과 일치 함.		6.1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정보를 알 수 있다.	1.5
	도난자동차였다.	3.0
	필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4.5
	자동차의 주인은 범인이다.	6.0
범인의 동작에 관하여	도보였다.	0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	0.6
	승용차	1.2
	자동차 색을 안다.	1.8
	자동차에 관한 설명이 가능.	2.4
	자동차 번호를 안다.	3.0
	무기사용	1.6
지 시 요 합		
1. 각 해당요인이 ‘범죄통계원표’에 있을 때 지수부여 2. 부여된 지수를 합산하여 합계가 10 이상일 때 조사착수 3. 중복된 항목은 단일 항목의 지수 중 높은 것으로 처리		

### 3-3. 예측방법의 종류

예측방법은 크게 전체적 예측법과 통계적 예측법이 있다. 전체적 예측법은 범죄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분석하여 그 사건의 검거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전체적 예측법은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가지 이론과 시각들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험 및 직관적인 판단으로 범죄검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사건에 내재하는 특수성이나 특이성을 집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가자들의 주관이 개입하기 쉬우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전체적 예측법은 범죄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부터는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 잘못된 판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한 예측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 판단가의 개인차로 인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적 예측법은 전체적 평가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통계적 예측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예측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검거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즉 기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측요인 중에서 빈도가 높거나 검거요인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하여 판정척도를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검거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판정척도를 사용하므로 판단과정에 전문가의 개입을 요하지 않고 전문가적 수사지식이나 수사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과거의 많은 사례에 대한 기록이나 경험에 의거하여 예측을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반면에 통계적 예측법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사건마다의 특성이나 범죄상황을 예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예측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예측에 있어 통계적 예측법을 활용한다.

## 제3장 연구방법론

### 제1절 자료수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성있는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발생사건에 관한 일시관계, 범행장소, 피해자, 피의자의 특징이나 범행수법, 목격자 등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제사건에 관한 검거가능지수를 추정하고자 했을 때는 수사초기의 자료와 더불어 수사착수 이후로 미제사건으로 분류할 때까지 수사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된 자료가 요구된다. 연구대상이나 연구기간의 경우도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는 범죄사건의 특징을 고려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해결되는 사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전국의 수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료수집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존자료 자체의 문제와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국내의 1개 경찰서를 선정하고 해당경찰서에서 작성보존하였던 발생통계원표와 범죄사건부를 중심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발생통계원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초기의 기초자료이며 범죄명, 범죄인지기간, 범죄수법, 수사단서, 피해자, 발생지역특성, 피해자,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발생통계원표에는 피의자의 검거여부나 검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통계원표만으로는 미제사건의 해결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sup>31)</sup> 이에 본 연구는 발생통계원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 연령, 검거여부,

31) 범죄수법원지나 피해통보표는 발생통계원표의 피상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범죄수법원지는 검거된 사건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우발적, 걱정적, 충동적 동기에 의한 단독범 또는 초범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작성되지 않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피해통보표의 경우도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작성되지 않고 또한 범죄발생시점이 아니라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을 때에 작성하도록 하여 실무부서에서 실제 그 작성사례가 많지 않다.

검거일자 등은 관할경찰서 과학수사반의 도움으로 범죄사건부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은 해당경찰서가 1999년 1분기에 입건한 사건들이며,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강간,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와 연관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사건들은 범죄사건부를 열람하여 검거여부와 검거일자를 확인했으며, 1999년 12월까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은 미검거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건수는 572건이다.

## 제2절 측정항목과 측정항목의 분포

본 연구는 범죄발생후 인지기간, 피의자 관련정보, 범죄수법, 범죄의 장소적·시간적 관계, 피해자 관련정보 등을 피의자 검거의 예측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예측차원에 포함된 측정항목과 이들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 2-1. 범죄발생후 인지기간

범죄발생후 인지기간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언제 수사기관에 인지되었는가를 측정할 항목이다. 범죄발생일과 경찰서의 인지일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범죄발생후 인지기간을 측정하였다. <표 3-1>은 범죄발생후 인지기간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572건 중에서 사건발생후 2일 이내에 인지된 사건은 233건(40.7%)이며, 228건(39.9%)은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인지되었다. 그외에 55건(9.6%)은 사건발생후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41건(7.2%)은 2주일에서 1달 사이에, 나머지 15건(2.6%)은 사건발생후 1개월이나 지난 뒤에 경찰서에 인지되었다.

범죄발생후 빠른 시간내에 사건을 접수했을 때에 수사기관은 훼손되지 않은 증거

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상세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체의 40.7%만이 3일 이내에 인지되고 나머지 60% 가량은 그 이후에야 인지되었다는 사실은 효율적 수사활동이 저해받은 한가지 요인이 될 것이다. 범죄신고가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3-1> 사건발생후 인지기간

구 분	빈 도	백 분 율
0~2일 이내	233	40.7
1주일 이내	228	39.9
2주일 이내	55	9.6
1개월 이내	41	7.2
1개월 이상	15	2.6
계	572	100.0

### 3-2. 피의자 관련정보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범인의 수, 연령, 성별, 신장, 체중, 체격, 피부색, 문신 및 외모적 특징, 착용한 옷, 옷의 특징, 옷의 색상, 시계 또는 보석 등의 착용여부와 종류, 성명 또는 별명, 흉기 또는 무기소지 여부, 흉기 또는 무기사용 여부, 도주방법, 도주방향, 차량이용 여부, 차량이용시 차량에 대한 내역, 차량종류, 차량번호, 차량색상, 차량의 특징, 차량손상여부 등은 사건해결에 특히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된다.<sup>32)</sup>

정확한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성광호가 지적한 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할

32) 성광호, 앞의 책, p. 140.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침입수단절도, 4) 감정표출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표출적 폭력행사(expressive violent act), 5)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도구적 폭력행사(instrumental violent act)로 분류하였다.

<표 3-4>는 본 연구의 분류체계에 따른 범죄수법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빈번했던 범죄수법은 표출적 폭력행사(가정폭력, 학교폭력, 상해, 폭행 등)로 237건(41.4%)에서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빈번했던 수법은 단순절도(이륜절도, 차량절도 등)로 147건(25.7%)이었고, 침입수단절도(침입절도)가 141건(24.7%)이었다. 세가지 범죄수법이 사용되었던 범죄는 전체의 91.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기망수단절도(네바다이, 들치기, 속임수절도, 소매치기 등)은 26건(4.5%)이었고 가장 희소하게 사용된 범죄수법은 도구적 폭력행사로 21건(3.7%)이었다.

<표 3-4> 범죄수법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단순절도	147	25.7
기망수단 절도	26	4.5
침입수단 절도	141	24.7
표출적 폭력행사	237	41.4
도구적 폭력행사	21	3.7
계	572	100.0

#### 3-4. 범죄의 장소적 시간적 관계

범죄의 장소적·시간적 관계로 본 연구로 고려한 항목은 범행장소, 범행시간, 범행요일 등이다. 먼저 범행장소의 경우에 본 연구는 발생통계원표상에 27가지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는 범행장소를 재분류하였다. 예비분석결과를 토대로 범행장소는 1) 아파트지역, 2) 단독주택지역, 3) 상가지역, 4) 공공지역, 5) 공개장소, 6) 유흥시설지역 등으로 재분류되었다. <표 3-5>는 재분류된 범행장소별로 범죄발생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공개장소로

187건(32.7%)의 5대 범죄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지역에서 94건(16.4%)이 발생했으며, 상가지역에서 96건(16.8%), 단독주택지역에서 84건(14.7%), 공공지역에서 65건(11.4%)이 발생하였다.<sup>34)</sup> 예상과 달리 유흥시설 지역에서는 46건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었고, 전체의 8.0%에 불과하였다.<sup>35)</sup>

&lt;표 3-5&gt;

범 행 장 소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아파트 지역	94	16.4
단독주택 지역	84	14.7
상가 지역	96	16.8
공공 지역	65	11.4
공개장소	187	32.7
유흥시설 지역	46	8.0
계	572	100.0

<표 3-6>은 범행시간을 새벽시간, 낮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으로 구분하고 범행시간별로 발생건수를 살펴본 것이다. 가장 사건발생이 많았던 시간대는 낮시간(오전 8시-오후 6시)으로 239건(41.8%)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2시)으로 183건(32.0%)이 발생하였으나 시간당 발생건수면에서는 심야시간 1시간당 약 45건이 발생하여 가장 사건발생율이 높았다. 저녁시간대(오후 7시- 오후 11시)에는 109

34) 본 연구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아파트지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 단독주택지역: 단독주택
- 3) 상가지역: 상가
- 4) 공공지역: 학교, 사무실, 공사장, 공장, 교회
- 5) 공개장소: 야산, 고속도로, 골목길 등
- 6) 유흥시설지역: 주점, 극장, 노래방 등

35) 이는 연구자료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료는 1999년 1분기에 발생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 기간은 IMF 영향으로 유흥시설들의 영입이 활발하지 않아 유흥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가 적었을 수 있다.

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19.1%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새벽시간대(오전 3시-오전 7시)에 가장 적은 41건(7.2%)가 발생하였다.

<표 3-6> 범 행 시 간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새벽시간	41	7.2
낮시간	239	41.8
저녁시간	109	19.1
심야시간	183	32.0
계	572	100.0

범행요일별로 사건발생정도를 살펴봤을 때에 요일별로 주목할만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표 3-7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89건과 91건이 발생하여 다른 요일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75건과 72건이 발생하여 요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표 3-6>과 <표 3-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활동이 적은 새벽시간대나 일요일에 사건발생이 적다는 사실은 사건발생과 활동 시간과의 관계를 시사한다.

<표 3-7> 범 행 요 일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월요일	89	15.6
화요일	91	15.9
수요일	83	14.5
목요일	75	13.1
금요일	82	14.3
토요일	80	14.0
일요일	72	12.6
계	572	100

### 3-5. 피해자 관련정보

검거 가능지수의 추정을 위하여 본 연구가 수집한 피해자 관련정보는 피해자수와 피해양상이다. 피해자수가 1인의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수가 많으면 수사기관은 더 많은 수사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검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 3-8>은 피해자수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피해자수가 1명이었던 경우가 486건(85.0%)로 가장 많다. 이에 반하여 2명이었던 경우는 55건으로 9.6%이고, 3명 이상의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31건으로 전체의 5.4%이다. 예비분석에서 2건의 범죄에서 피해자가 8명이 발생하고, 1건에서 피해자가 7명이 발생했으나 해당사건수가 적어 3건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3-8> 피 해 자 수

구 분	빈 도	백 분 율
1명	486	85.0
2명	55	9.6
3명 이상	31	5.4
계	572	100.0

<표 3-9> 피 해 양 상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재산피해	326	57.0
신체피해	246	43.0
계	572	100.0

<표 3-9>는 범죄피해를 재산상의 피해와 신체상의 피해로 구분하고 피해양상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326건으로 전체 사건의 57.0%를 차

지하였다. 발생통계원표는 재산피해를 그 규모별로 구분하였으나 예비분석결과 다액의 재산피해가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20건이 소액의 재산피해로 나타나 금액의 다과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신체상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246건(43.0%)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보다 80건 정도가 적었다.

### 3-6. 검거 관련정보

본 연구는 검거와 관련하여 검거여부와 검거기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먼저 검거여부는 피의자가 검거되었는가 혹은 검거되지 않았는가를 측정할 항목이다. 1999년 1분기에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8개월이 지난 1999년 12월까지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면 검거로 구분했으며, 그때까지 검거되지 않았으면 미검거로 구분하였다. 검거기간은 사건발생 후 언제 피의자가 검거되었는지를 계산하여 1일 단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현행범의 경우에 검거기간은 0일이 되며 1월 4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1월 9일에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면 검거기간은 5일로 계산되었다.

<표 3-10>은 검거여부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1999년 1분기에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는 323건으로 전체의 56.5%이었고 미검거는 249건으로 43.5%이다. 공식통계에 보고되는 검거율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에 본 연구의 검거율 56.5%은 지나치게 낮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식통계의 검거율이 과대보고되었을 수 있다. 공식통계는 발생통계원표에 보고된 사건과 검거사건을 비교하여 검거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여죄수사과정에서 발생통계원보가 작성되지 않았던 숨은범죄(hidden crime)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여죄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생통계원보가 작성되지 않고 반면에 검거건수로는 보고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거율이 높게 계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도 1분기에 발생한 사건을 1999년 12월까지 추적하고 이 때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미검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검거되었을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표 3-10>의 결과는 실제의 검거율보다 낮을 수 있다.

검거기간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에 피의자 검거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사건발생 후 2일 이내이다<표 3-11 참조>. 사건발생후 2일 이내에 피의자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는 175건(30.6%)으로 전체의 1/3 가량이 이 기간에 있었다.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검거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후 1주일 이내에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는 71건(12.4%)으로 줄어들며, 2주일 이내는 34건(5.9%), 1개월 이내는 27건(4.7%) 등으로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이후에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는 6건(1.0%)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의자 검거는 사건발생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검거가능성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검 거 여 부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미검거	249	43.5
검거	323	56.5
계	572	100.0

<표 3-11> 검 거 기 간

구 분	빈 도	백 분 율
0~2일	175	30.6
1주일 이내	71	12.4
2주일 이내	34	5.9
1개월 이내	27	4.7
2개월 이내	10	1.7
2개월 이상	6	1.0
미검거	249	43.5
계	572	100.0

마지막으로 <표 3-12>는 범죄유형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572건 중에서 절도범죄가 298건(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252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한다. 두가지 범죄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6.2%로 대다수의 사건이 절도범죄나 폭력범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범죄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간범죄가 13건으로 2.3%, 강도범죄가 7건으로 1.2%, 살인범죄가 2건으로 0.3%에 불과하다.

&lt;표 3-12&gt;

## 범죄 유형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강 간 범 죄	13	2.3
강 도 범 죄	7	1.2
살 인 범 죄	2	0.3
절 도 범 죄	298	52.1
폭 력 범 죄	252	44.1
계	572	100.0

## 제3절 자료분석방법

검거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단계: 피의자검거 유관요인의 판별

- 제1단계에서는 피의자 검거에 있어 유관한 요인들을 판별하기 위하여 예측요인들과 검거와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단계: 유관요인별 검거 기여도 평가

- 제2단계에서는 예측요인별로 피의자 검거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 제2단계에서 자료분석은

- 1) 예측요인의 이항변수(dummy variable)로의 전환
- 2) 회귀분석의 실시
- 3) 이항변수 표준화회귀계수의 계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제3단계: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개발

- 제3단계에서는 전단계에서 계산한 표준화회귀계수의 유의도를 평가하여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에 투입할 항목을 선정하고,
- 실무상 활용편의를 위하여 표준화회귀계수를 수정가중치로 변환하여 검거가능지수 산출방정식을 도출하였다.
- 피어슨상관계분석을 통하여 표준화회귀계수에 기초한 검거가능지수와 수정가중치에 입각한 검거가능지수의 등가성을 검증하였고, 교차분석을 통하여 검거가능지수와 실제 검거율과의 합치도를 비교하였다.

## 제4장 연구결과

### 제1절 피의자검거 유관요인의 판별

본 연구는 범죄발생후 인지기간, 피의자 관련정보, 범죄수법, 범죄의 장소적·시간적 관계, 피해자 관련정보 등을 피의자검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정하였다. 연구에서 상정한 모든 요인들이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활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상정하는 요인들을 지수산출에 활용한다면 연구마다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방식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적 검증작업을 통하여 연구에서 상정했던 영향요인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투입할 요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경험적 타당성의 검토와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사용할 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상정했던 영향요인들과 피의자 검거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 1-1. 범죄발생후 인지기간

<표 4-1>은 범죄발생후 인지기간과 검거여부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4-1>에 의하면 인지기간과 검거여부와는 chi-square 값이 45.5로 신뢰수준 5%(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이다. 그리고 범죄발생후 2일 이내에 인지되었을 때의 검거율이 69.5%이고, 반면에 1주일 이내의 경우는 39.9%이고, 2주일 이내는 56.4% 등으로 인지기간이 짧을수록 검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수사기관은 훼손되지 않는 현장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격자 진술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인지기간은 경험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므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36) <표 4-1>에 의하면 범죄발생후 인지기간이 2주 이상의 경우에 검거율이 69.6%이다. 이러한

<표 4-1> 범죄발생후 인지기간과 검거여부의 교차분석

	범죄 발생 후 인지기간			
	2일이내	1주일	2주일	2주일 이상
미 검 거	71 (30.5)	137 (60.1)	24 (43.6)	17 (30.4)
검 거	162 (69.5)	91 (39.9)	31 (56.4)	39 (69.6)
chi-square=45.5, D.E.=3, P=0.001				

1-2. 피의자 관련정보

<표 4-2>는 피의자수와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P<.05) 피의자수 확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피의자가 1인 즉 단독범행이라고 확인된 경우의 검거율은 95.2%이고 공범존재가 확인된 경우의 검거율은 98.4%이다. 피의자수가 확인된 경우의 높은 검거율에 비하여 확인되지 못한 경우에 검거율은 지극히 낮다. 피의자가 몇명인지를 모른다고 기록된 268건 중에서 검거건수는 31건에 불과하여 검거율은 2.1%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검거 가능지수를 산출하는 데에 피의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7)</sup>

결과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범죄발생후 상당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하는 경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 후에 가해자가 타협의 의향을 밝혀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고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이 지나서야 신고하는 사례들의 검거율이 높을 수 있다.

37) 이에 반하여 피의자의 연령은 검거가능성의 산출에 활용할 수 없는 요인으로 판별되었다. 피의자연령과 검거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피의자연령이 확인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검거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따라서 피의자연령은 검거가능성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추 중요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lt;표 4-2&gt; 피의자수 확인과 검거여부의 교차분석

	피의자 수 확인		
	단독범행	공범존재	모른다
미 검 거	10 (4.9)	2 (1.6)	237 (97.9)
검 거	196 (95.2)	122 (98.4)	31 (2.1)
chi-square=505.4, D.F.=2, P=0.001			

## 1-3. 범죄수법

&lt;표 4-3&gt; 범죄수법과 검거여부의 교차분석

	범죄수법				
	단순	기망	침입	표출폭력	도구폭력
미 검 거	114 (77.6)	22 (84.6)	91 (64.5)	20 (8.4)	2 (9.5)
검 거	33 (22.5)	4 (15.4)	50 (35.5)	217 (91.6)	19 (90.5)
chi-square=241.0, D.F.=4, P=0.001					

범죄수법과 검거와의 교차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범죄수법에 따라 검거율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폭력수단을 사용한 범죄의 경우에 검거율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폭력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검거율은 최소 90% 이상이지만(표출폭력:91.6%, 도구폭력:90.5%), 폭력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의 검거율은 22.5%(단순절도), 15.4%(기망절도), 35.5%(침입절도) 등

으로 앞서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이같은 관계는 자유도 4에서 chi-square값이 241.0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범죄수법도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범죄의 장소적 · 시간적 관계

<표 4-4> 범행장소와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구 분					
	아파트	단 독	상 가	공공지역	공 개	유 흥
미 검 거	57 (60.6)	27 (32.1)	29 (30.2)	35 (53.9)	89 (47.6)	12 (26.1)
검 거	37 (39.4)	57 (67.9)	67 (69.8)	30 (46.2)	98 (52.4)	34 (73.9)
<b>chi-square=32.3, D.F.=5, P=0.001</b>						

범죄의 장소적 · 시간적 관계와 검거와의 관계는 범행장소, 범행시간, 범행요일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중에서 <표 4-4>는 범행장소와 검거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흥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검거율이 73.9%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검거율이 높은 지역은 단독주택지역(67.9%), 상가지역(69.8%), 공개장소(52.4%) 등의 순이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39.4%로 가장 낮다. 유흥지역이나 상가지역의 경우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아파트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범행장소별로 검거율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범행장소와 검거와의 관계 역시 chi-square값이 32.3으로 자유도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어 검거가능성 지수의 추정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는 범행시간과 검거와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새벽시간과 심야시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검거율이 높다(새벽:68.8%, 심야:67.2%). 반면에 낮

시간대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검거율은 50.8% 그리고 저녁시간대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는 46.3% 등으로 검거율이 낮은 경향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chi-square 값은 자유도 3에서 1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며, 따라서 범행시간도 검거가능성 지수의 추정에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됨을 알 수 있다.

<표 4-5> 범행시간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구 분			
	새벽	낮	저녁	심야
미 검 거	13 (31.7)	118 (49.4)	58 (53.2)	60 (32.8)
검 거	28 (68.3)	121 (50.6)	51 (46.8)	123 (67.2)
<b>chi-square=18.4, D.F.=3, P=0.001</b>				

<표 4-6> 범행요일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미 검 거	37 (41.6)	42 (46.2)	43 (51.8)	30 (40.0)	31 (37.8)	34 (42.5)	32 (44.4)
검 거	52 (58.4)	49 (53.9)	40 (48.2)	45 (60.0)	51 (62.2)	46 (57.5)	40 (55.6)
<b>chi-square=4.2, D.F.=6, P=0.644</b>							

범죄의 장소적 시간적 관계 중에서 범행요일은 검거가능성을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표 4-6 참조>. 금요일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검거율이 62.5%이고, 목요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60.0%이며, 수요일의 경우엔 검거율이 48.2%,

화요일의 경우엔 53.9% 등으로 범행요일별로 다소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범행요일과 검거와의 관계는 chi-square값이 자유도 6에서 4.2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범행요일은 피의자검거와 관련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

1-5. 피해자 관련정보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 검거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서 고려한 항목은 피해자수와 피해양상이다. 먼저 피해자수와 검거와의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여기서 단독피해란 피해자가 1명이었던 경우이며 다수피해란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다. <표 4-7>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단독피해와 다수피해의 검거율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다. 다수피해의 경우에 검거율은 95.4%로 매우 높다. 이에 반하여 단독피해의 경우는 검거율이 49.6%에 불과하여 약 과반수에서만 피의자가 검거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chi-square값이 62.2로 자유도 1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표 4-7> 피해자수와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피 해 자 수	
	단 독 피 해	다 수 피 해
미 검 거	245 (50.4)	4 (4.7)
검 거	241 (49.16)	82 (95.4)
<b>chi-square=62.2, D.F.=1, P=0.001</b>		

<표 4-8>은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피해양상과 검거여부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범죄피해의 양상별로 검거율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사건들의 검거율은 91.9%로 대단히 높다. 이에 반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들의 검거율은 매우 낮다. 재산피해의 검거율은 29.8로 평균 10건 중에서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는 3건 미만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피해양상과 검거여부와의 관계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항목간의 관계에 대한 chi-square값은 220.1로 자유도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표 4-8> 피해양상과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

	피 해 양 상	
	재 산 피 해	신 체 피 해
미 검 거	229 (70.3)	20 (8.1)
검 거	97 (29.8)	226 (91.9)
chi-square=220.1, D.F.=1, P=0.001		

지금까지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사용할 유관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검거가능성의 유관요인으로 상정하였던 항목들의 대부분이 검거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범죄발생후 인지시간의 경우에, 빠른 시간내에 수사기관이 사건발생을 인지하면 검거율이 높았으며 피의자수가 확인된 경우에도 역시 검거율이 높았다. 또한 범죄수범의 경우에 폭력수단이 사용된 사건들의 검거율이 높았으며, 유흥지역이나 상가지역 등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검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범행장소별로도 검거율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범행시간의 경우에는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발생한 범죄들의 검거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낮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발생한 범죄들의 검거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수가 다수인 경우에 검거율이 높았으며, 범죄피해가 신체적 피해인 경우에 역시 검

거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은 chi-square 검증결과 모두 검거가능성과 관련한 요인들로 판별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에 입각해 검거가능성 산출모형에는 범죄발생후 인지시간, 피의자수, 범죄수법, 범행장소, 범행시간, 피해자수, 피해양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반면에 피의자연령과 범행요일은 항목분포의 편향성과 통계적 유의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다음 절에 논의를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평가부터는 제외하였다.

## 제2절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평가

지금까지 교차분석을 통하여 피의자 검거가능성과 관련한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교차분석은 이를 통하여 검거가능성과 관련한 수사항목의 종류는 구별할 수 있지만 각각의 항목이 사건해결이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는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에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각각의 수사항목이 사건해결에 미치는 기여도를 검토한다.

### 2-1.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회귀분석이란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판별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흔히 Y로 표시하며 독립변수는 X로 표시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 $Y = BX$ ”라는 회귀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B는 비표준화회귀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로 종속변수 Y의 변화에 미치는 X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회귀분석은 비표준화회귀계수의 수치 즉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 혹은 기여도를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으로 계산한다. 비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기여도를 판별할 수 있지만 비표준화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측정단위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반면에 표준화회귀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표준점수(z-score, standard score)로 변화한 후에 추정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다.<sup>38)</sup>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각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했을 때에 기존에 수집된 수사항목의 형태로는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를 가정하기 때문에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구성된 수사항목을 항목의 구성내역별로 가변인(dummy variable, 이항변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범행장소란 수사항목은 1) 아파트지역, 2) 단독주택지역, 3) 상가지역, 4) 공공지역, 5) 공개장소, 6) 유흥시설지역 등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범행장소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명목척도를 1)아파트지역 가변인, 2)단독주택지역 가변인, 3)상가지역 가변인, 4)공공지역 가변인, 5)공개장소 가변인, 6)유흥시설지역 가변인 등 6 개의 가변인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검거가능성과 관련한 것으로 판별된 수사항목들을 모두 가변인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각개의 가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각 가변인이 사건해결 즉 검거가능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각 가변인의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표 4-9>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한 각 가변인별 비표준화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통계적 검증치(test-value)인 T값, T값의 확률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4-9>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사항목에 관한 가변인들은 2일내, 1인범행, 다수범행, 신체피해, 표출폭력, 도구폭력, 단독주택, 상가, 유흥지역, 다수피해, 새벽, 심야시간 등이다.<sup>39)</sup> 예를 들어 범죄발생후 2

38) Pedhazur, Elazar J.,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1982, CBS College Publishing, p. 15; 63-64.

실제 표준화회귀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beta = b \cdot (S_x / S_y)$$

(여기서  $\beta$  = 표준화회귀계수

b = 비표준화회귀계수

$S_x$  = 독립변수의 표준편차

$S_y$  = 종속변수의 표준편차

39) 범죄인지기간의 경우 2주일후의 회귀계수는 0.1460으로 사건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

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22% 가량(비표준화회귀계수:0.2204) 증가하며, 또한 피의자가 1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60% 가량(1인범행의 비표준화회귀계수:0.6045)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단독범행의 비표준화회귀계수의 값이 2일내의 값보다 크다고 해서 단독범행이 2일 내에 비해서 더욱 검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했듯이 비표준화회귀계수의 값은 독립변수의 측정단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표 4-9>는 범죄사건 수사에 있어 담당형사가 무엇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2일내, 1인범행, 다수범행, 신체피해, 표출폭력, 도구폭력, 단독주택, 상가지역, 유흥지역, 다수피해, 새벽, 심야시간 등의 요인이 사건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담당형사가 이러한 요인들에 관심을 갖고 관련정보를 수집한다면 피의자 검거의 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죄발생후 가능한 2일 이내에 이를 인지하고(2일내), 1인 범행인지 다수범행인지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1인범행, 다수범행), 신체적 피해양상에 주목하고(신체피해), 범죄수법 측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목적을 폭력을 행사했는지(표출폭력, 도구폭력), 범죄가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유흥지역에서 발생했는지(단독주택, 상가지역, 유흥지역), 피해자가 2인 이상인지(다수피해), 범죄가 새벽이나 심야에 발생했는지(새벽, 심야시간) 등에 주목하고 수사했을 때에 피의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인별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화회귀계수의 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beta = b \cdot (S_x / S_y)$ ). 표준화회귀계수를 비교하여 요인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사건해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수사항목 가변인은 신체피해이다. 신체피해의 표준화회귀계수는 0.6203으로 다른 가변인들에 비해 그 값이 크다. 신체피해 다음으로 사건해결에 큰 기여를 하는 요인은 1인범행의 확인, 표출적 폭력수단의 사용 등으로 표준화회귀계수가 각각 0.5853, 0.5953이다. 다른 수사항목 가변인들에

---

으로 추정되고, 회귀계수의 통계적 검증치인 T값도 2.10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 견해와도 일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적은 요인은 단독주택 가변인과 새벽 가변인이다. 범행장소가 단독주택인 경우와 범위가 새벽에 발생한 경우에 이들이 사건해결에 미치는 기여도는 각각 0.0953과 0.0663에 불과하다. 따라서 1인 범행을 확인했을 때와 범행장소가 단독주택이었을 때에 양자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약 6배 더 많이 사건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인범행의 표준화회귀계수/범행장소의 표준화회귀계수).

<표 4-9> 수사항목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

가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value	P-value
2 일 내	0.2204	0.2184	5.34	0.0001
1 주 일 내	-0.2753	-0.2719	-6.75	0.0001
2 주 일 내	-0.0012	-0.0007	-0.02	0.9869
2 주 일 후	0.1460	0.0875	2.10	0.0363
1 인 범 행	0.6045	0.5853	17.23	0.0001
다 수 범 행	0.5352	0.4448	11.86	0.0001
신 체 피 해	0.6212	0.6203	18.88	0.0001
단 순	-0.4579	-0.4035	-10.53	0.0001
기 망	-0.4304	-0.1808	-4.39	0.0001
침 입	-0.2788	-0.2423	-5.96	0.0001
표 출 폭 력	0.5992	0.5953	17.69	0.0001
도 구 폭 력	0.3530	0.1339	3.23	0.0013
아 파 트	-0.2047	-0.1530	-3.70	0.0002
단 독 주 택	0.1335	0.0953	2.29	0.0226
상 가	0.1601	0.1207	2.90	0.0038
공 공 지 역	-0.1164	-0.0745	-1.78	0.0751
공 개 장 소	0.0604	-0.0571	-1.37	0.1726
유 흥 지 역	0.1897	0.1040	2.50	0.0128
다 수 피 해	0.4576	0.3299	8.34	0.0001
새 벽	0.1274	0.0663	1.59	0.1134
낮 시 간	-0.1003	-0.0998	-2.40	0.0170
저 녁 시 간	-0.1196	0.0947	-2.27	0.0235
심 야 시 간	0.1580	0.1486	3.59	0.0004

## 2-2. 범죄유형별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

범죄유형별로 수사단서항목이 사건해결에 미치는 기여도는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주거에 침입하여 도난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노상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중요한 수사항목은 같지 않을 것이다. 주거침입범죄에서는 침입수법, 도주로 등이 중요한 수사항목이 되겠지만 노상폭행의 경우는 주위 목격자 유무, 사용무기의 양태 등이 중요한 수사항목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5대 범죄 중에서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는 가장 빈번한 범죄유형이다<표 3-12 참조>. 다음에서 논의할 사항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수사항목의 사건해결 기여도에 관한 것이다. 범죄유형별 분석도 앞서 전체범죄의 분석절차를 따랐다. 수사항목의 구성내역을 가변인으로 변환하고 각 가변인별로 회귀분석을 반복해 실시하여 각 가변인이 사건해결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표 4-10>은 절도범죄의 경우에 가변인별로 사건해결 기여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0>을 통하여 절도범죄 피의자의 검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변인은 1인범행, 다수범행, 침입, 단독주택, 다수피해, 새벽 등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1인인 것으로 확인되면 그렇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81% 가량 높아지며, 피의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면 그 가능성은 72% 가량 증가하고, 침입절도인 경우엔 20% 가량, 단독주택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17% 가량,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59% 가량, 새벽시간대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32% 등으로 검거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또한 <표 4-10>의 표준화회귀계수들을 비교함으로써 수사항목 가변인 중에서, 특히 1인범행인지 혹은 다수범행인지의 여부는 다른 가변인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게 사건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범행의 표준화회귀계수는 0.7211이고 다수범행의 계수는 0.4535로 다른 가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1인범행 가변인의 표준화회귀계수는 심야시간 가변인(0.1037)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수의 확인이 사건해결에 중요한 정보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t;표 4-10&gt; 수사항목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 (절도범죄)

예측인자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value	P-value
2 일 이 내	0.1011	0.1069	1.85	0.1069
1 주 일	-0.1311	-0.1511	-2.63	0.0090
2 주 일	0.0083	0.0055	0.10	1.9245
2 주 일 후	0.1305	0.0863	1.49	0.1371
1 인 범 행	0.8184	0.7211	17.91	0.0001
다 수 범 행	0.7232	0.4535	8.75	0.0001
재 산 피 해	0.2525	0.0337	0.58	0.5628
단 순	-0.1454	-0.1667	-2.91	0.0039
기 망	-0.1785	-0.1098	-1.90	0.0548
침 입	0.1954	0.2248	3.97	0.0001
아 파 트	-0.0703	-0.0672	-1.16	0.2472
단 독 주 택	0.1747	0.1441	2.51	0.0127
상 가	0.0940	0.0730	1.26	0.2088
공 공 지 역	0.0048	0.0039	0.07	0.9464
공 개 장 소	-0.1125	-0.1198	-2.08	0.0388
유 흥 지 역	0.0586	0.0276	0.47	0.6355
다 수 피 해	0.5936	0.1921	3.37	0.0009
새 벽	0.3234	0.1775	3.10	0.0021
낮 시 간	-0.0234	-0.0270	-0.46	0.0270
저 녁 시 간	-0.2055	-0.1874	-3.28	0.0012
심 야 시 간	0.1037	0.1042	1.80	0.0725

<표 4-11>은 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항목의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1>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범죄 피의자의 검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은 1인범행, 다수범행, 신체피해, 표출폭력, 단독주택, 다수피해 등의 수사항목 가변인들이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1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렇지 못한 사건들에 비해 사건해결 가능성은 11% 가량 증가하며, 다수범행이라고 확인되면 해결가능성은 16% 가량 증가하고, 신체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5% 가량 증가하며, 표출폭력인 경우에는 18% 가량, 단독주택에서 범죄가 있었던 경우는 11% 가량, 피

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8% 가량 사건해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또한 표준화회귀 계수의 비교했을 때에 다수범행의 표준화회귀계수가 0.2588로 가장 높아 다른 가변인들에 비해 사건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특히 단독주택의 0.1303에 비해서는 2배 가량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수사항목 가변인별 사건해결 기여도 (폭력범죄)

예측인자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value	P-value
2 일 이 내	0.0553	0.0940	1.49	0.1365
1 주 일	-0.1113	-0.1682	-2.70	0.0074
2 주 일	-0.0275	-0.0280	-0.44	0.6583
2 주 일 후	0.1071	0.1147	1.83	0.0691
1 인 범 행	0.1111	0.1886	3.04	0.0027
다 수 범 행	0.1558	0.2588	4.24	0.0001
신 체 피 해	0.1511	0.1566	2.51	0.0128
단 순	-0.1492	-0.1077	-1.71	0.0880
기 망	-0.4080	-0.1233	-1.97	0.0505
표 출 폭 력	0.1823	0.1469	2.35	0.0196
아 파 트	-0.0719	-0.0732	-1.16	0.2468
단 독 주 택	0.1106	0.1303	2.08	0.0387
상 가	0.0741	0.1035	1.65	0.1010
공 공 지 역	-0.0519	-0.0489	-0.77	0.4395
공 개 장 소	-0.0612	-0.0997	-1.58	0.1145
유 흥 지 역	-0.0134	-0.0143	-0.23	0.8208
다 수 피 해	0.0834	0.1318	2.10	0.0397
새 벽	-0.1966	-0.1725	-2.77	-0.0061
낮 시 간	0.0372	0.0599	0.95	0.0599
저 녁 시 간	-0.0110	-0.0148	-0.23	0.8157
심 야 시 간	0.0268	0.0447	0.71	0.4803

또한 <표 4-10>과 <표 4-1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서 중요한 수사단서는 서로 다르다. 절도범죄의 경우에 중요한 가변인들은 1인범행, 다수범행,

침입, 단독주택, 다수피해, 새벽 등이다. 그러나 폭력범죄에서는 1인범행, 다수범행, 신체 피해, 표출폭력, 단독주택, 다수피해 등이다. 1인범행, 다수범행, 단독주택, 다수피해 등은 두가지 범죄유형 모두에서 사건해결에 중요한 단서지만 이외의 가변인들은 특정한 범죄 유형에만 사건해결의 단서로 작용한다. 1인범행과 다수범행은 피의자수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폭력범죄나 재산범죄 모두에서 사건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역시 두가지 범죄유형 모두에서 피의자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피의자를 쉽게 검거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들 가변인들을 제외하고,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서 사건해결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인들은 서로 다르다. 새벽처럼 범죄의 시간적 관계에 대한 사항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해결 기여요인이지만 폭력범죄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침입수단의 존부도 절도범죄의 경우엔 중요한 사건해결요인이지만 폭력범죄에서는 그렇지 않다. 역으로, 폭력범죄에서는 신체피해의 유무나 표출적 폭력행사의 여부가 사건해결에 중요하지만 재산범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수의 확인, 범행장소의 확인, 피해자수의 확인 등에 관한 정보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침입수단이나 범행시간에 관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신체피해의 특징과 표출적 폭력행사에 관한 자료수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3절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

실무부서에서 사건을 대할 때마다 매번 본 연구에서와 같은 자료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수사실무부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에 대하여 논의한다.

### 3-1.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은 사건해결과 관련한 수사항목들을 제시하고 이들에 부여할 가중치를 도표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실무에서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표 4-12>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이다.

<표 4-12>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정보요인		표준화 회귀계수	수정가중치
범죄발생후 인지기간	2일이내	0.2184	4 점
피의자 관련정보	단독범행 확인	0.5852	11 점
	다수범행 확인	0.4448	8 점
범죄피해 관련정보	신체피해	0.6203	12 점
범행수법 관련정보	표출적 폭력행사	0.5953	11 점
	도구적 폭력행사	0.1339	2 점
범행장소 관련정보	단독주택지역	0.0953	1 점
	상가지역	0.1206	2 점
	유흥시설지역	0.1040	2 점
피해자 관련정보	다수피해자	0.3298	6 점
범행시간 관련정보	새벽시간	0.0662	1 점
	심야시간	0.1486	2 점
각 해당요인이 '범죄통계원표'에 있을 때 지수부여			

피의자 검거가능지수(Solvability Index)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Solvability Index} = & 2\text{일이내 (4)} + \\
 & 1\text{인범행 확인 (11)} + \\
 & \text{다수범행확인 (8)} + \\
 & \text{신체피해 (12)} + \\
 & \text{표출적 폭력행사 (11)} + \\
 & \text{도구적 폭력행사 (2)} + \\
 & \text{단독주택지역 (1)} + \\
 & \text{상가지역 (2)} + \\
 & \text{유흥시설지역 (2)} + \\
 & \text{다수피해자 (6)} + \\
 & \text{새벽시간 (1)} + \\
 & \text{심야시간 (2)}
 \end{aligned}$$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집한 수사항목 중에서 산출모형의 정보요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각 정보요인의 수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산결과 검거가능지수가 높으면 이는 검거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거가능지수가 낮다면 이는 사건의 해결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수사착수단계나 혹은 미제사건의 처리단계에서 가해자와 관련하여 단독범행이라는 정보가 수집되었으면 수정가중치 11점이 부과된다. 반면에 심야절도에서와 같이 가해자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는 수정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사건의 검거가능지수는 앞서에 비해 11점이 낮고 따라서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앞서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수정가중치는 본 연구에서 표준화회귀계수가 소숫점 이하의 수치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표준화 회귀계수를 20배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표준화회귀계수와 수정가중치는 표준화회귀계수의 단위만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사용하든지 각 정보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표 4-13>은 표준화회귀계수에 의한 검거가능지수, 수정가중치에 의한

검거가능지수, 실제 검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회귀계수에 의한 검거가능지수와 수정가중치에 의한 검거가능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관계의 정도가 0.9996로, 두가지 지수가 비록 표시형식은 다르지만 측정된 내용면에서는 등가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가지 방식의 검거가능지수와 실제 검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표준화 회귀계수를 사용한 경우에 0.79, 수정가중치를 사용한 경우에 0.78로 상호일치하며 실제 검거율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

<표 4-13> 표준화회귀계수와 수정가중치에 의한 검거가능지수와 실제검거율과의 관계

	표준화 회귀계수 검거가능 지수	수정가중치 검거가능지수	실제검거율
표준화 회귀계수 검거가능 지수	1	0.9996 (P <.01)	0.7860 (P <.01)
수정가중치 검거가능지수		1	0.7842 (P <.01)
실제검거율			1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거가능지수와 실제 검거여부와의 합치도를 분석하였다. 검거가능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검거가능지수들을 상하로 구분하고 실제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4>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 사건은 255건이며 낮다고 추정된 사건은 317건이다. 높다고 추정된 사건들 중에서 실제 피의자가 검거된 것은 235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572건의 41.1%에 해당하고 또한 낮다고 추정된 317건 중에서 실제 검거가 되지 않은 사건은 229건으로 전체의 40.0%이다. 즉 전체의 81.1%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바가 합치하였으며 반면에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지만 미검거된 것이 20건,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하였지만 검거된 것이 88건으로 전체의 19.1%는 추정결과와 합치하지 않았다. 80% 가량의 합치율은 낮

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수사실무부서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의 합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14>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의 합치도

	구 분		열 전 체
	높은 가능성 ( <19.4)	낮은 가능성 ( <19.4)	
미 검 거	20 (3.5)	229 (40.0)	249 (43.5)
검 거	235 (41.1)	88 (15.4)	323 (56.5)
행 전 체	255 (44.6)	317 (55.4)	572 (100.0)
chi-square=238.4, D.F.=1, P=0.001			

### 3-2. 범죄유형별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

다음 <표 4-15>는 절도범죄의 경우에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요인과 각 정보요인별 수정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절도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검거가능지수는 <표 4-15>에서 제시된 수정가중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는데 단독범행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새벽에 주택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조사되었을 때에 이 사건의 검거가능지수는 단독범행 확인(14점), 침입수단 절도(4점), 새벽(3점)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검거가능지수는 21점(14점+4점+3점)으로 산출된다.

<표 4-16>은 절도범죄의 경우에 검거가능지수와 실제 검거여부와의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16>은 검거가능지수를 평균값(5.5점)을 기준으로 평균값 이상을 받은 사건들을 검거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그리고 평균값 이하를 받은 사건들을 검거가능성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실제 검거여부와의 교차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절도범죄는 모두 298건이었는데 검거가능지수의 평균값 이상인 경우가 82건이

있고 이하인 경우는 216건이었다.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 82건(높은 가능성 집단) 중에서 실제 검거된 사건은 71건으로 전체의 23.8%이었다. 또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추정된 216건(낮은 가능성) 중에서 실제 검거되지 않은 사건은 212건으로 전체의 71.1%이었다. 즉 검거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추정한 경우에 실제로 검거된 사건이 23.8%, 낮다고 추정하였는데 실제 검거되지 않은 사건이 71.1%로 전체적으로 합치율은 약 94.9%이다.

<표 4-15>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절도범죄)

정보요인		표준화 회귀계수	수정가중치
피의자 관련정보	단독범행 확인	0.7211	14 점
	다수범행 확인	0.4435	9 점
범행수법 관련정보	침입수단 절도	0.2248	4 점
범행장소 관련정보	단독주택지역	0.1441	3 점
피해자 관련정보	다수피해자	0.1921	3 점
범행시간 관련정보	새벽시간	0.1775	3 점
각 해당요인이 '범죄통계원표'에 있을 때 지수부여			

<표 4-16>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의 합치도 (절도범죄)

	구분		열 전체
	높은 가능성 ( <5.5)	낮은 가능성 ( <5.5)	
미 검 거	11 (3.7)	212 (71.1)	223 (74.8)
검 거	71 (23.8)	4 (1.3)	75 (25.2)
행 전 체	82 (27.5)	216 (72.5)	298 (100.0)
chi-square=226.6, D.F.=1, P=0.001			

<표 4-17>은 폭력범죄의 경우에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요인과 정보요인별 수정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7>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범죄의 검거가능지수는 단독범행 확인, 다수범행 확인, 신체피해, 단독주택지역, 다수피해자 등의 정보요인에 의해 산출된다. 단독범행임을 수사기초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때의 수정가중치는 3점이며, 다수범행을 확인할 수 있을 때의 수정가중치는 5점, 신체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3점, 단독주택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의 수정가중치는 2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의 수정가중치는 2점 등이다. 폭력범죄 피의자 검거가능지수는 수사기초자료에서 이상의 정보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요인들에 수정가중치들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 4-17> 피의자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 (폭력범죄)

정 보 요 인		표준화 회귀계수	수정가중치
가해자 관련정보	단독범행 확인	0.1886	3 점
	다수범행 확인	0.2588	5 점
범죄피해 관련정보	신체피해	0.1566	3 점
범행장소 관련정보	단독주택지역	0.1303	2 점
피해자 관련정보	다수피해자	0.1303	2 점
각 해당요인이 '범죄통계원표'에 있을 때 지수부여			

<표 4-18>은 폭력범죄의 경우에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폭력범죄는 모두 252건이었다. 사건들의 검거가능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전체의 평균값(7.2점)을 기준으로 검거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가능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높은 가능성 집단으로 분류된 사건수는 125건이었으며, 낮은 가능성 집단으로 분류된 사건수는 127건이었다. 높

은 가능성 집단에서 실제 검거된 사건은 124건으로 전체의 49.6%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구분한 집단에서 실제 검거되지 않은 사건은 23건으로 전체의 9.1%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의 예측과 실제 검거여부가 일치한 것으로 폭력범죄의 경우에 합치도는 58.7%(49.6%+9.1%)로 추정할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 비하여 폭력범죄의 합치도는 현저히 낮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이같은 차이는 폭력범죄의 검거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앞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폭력범죄자의 검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발굴과 이를 검거가능지수 산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표 4-18> 검거가능지수별 집단구분과 실제 검거여부의 합치도 (폭력범죄)

	구 분		열 전 체
	높은 가능성 (> 7.2)	낮은 가능성 (<7.2)	
미 검 거	1 (0.4)	23 (9.1)	24 (9.5)
검 거	124 (49.2)	104 (41.3)	228 (90.5)
행 전 체	125 (49.6)	127 (50.4)	252 (100.0)
chi-square=21.9, D.F.=1, P=0.001			

## 제4절 수사개시를 위한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정

미국경찰의 경우에,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총합이 10이 넘는 범죄사건을 피의자 검거가 가능한 사건으로 분류한다.<sup>40)</sup> 우리나라는 미국과 수사구조가 다르고 또한 수사기

40) Swope, Ross E., Community Involvement in Reducing Property Crime,

관이 보존하는 수사기초자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설정한 10점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개시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검거가능지수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수사개시를 위한 검거가능지수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 것이다. 1%의 검거확률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책임자가 있을 수 있으며, 60%의 검거확률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수사책임자가 있을 수도 있다. 수사개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높은 점수의 검거가능지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해결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높은 점수대역을 기준으로 하면 수사착수를 하는 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될 것이다.<sup>41)</sup> 역으로 검거가능지수의 낮은 점수대역이 수사착수의 기준이 된다면 수사를 하게 되는 사건은 늘겠지만, 해결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에 수사가 실시됨으로써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검거가능지수의 본래의 도입목적들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수사개시를 위한 검거가능지수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거가능지수를 누적백분비에 따라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10% 단위로 나누고 각 범위별로 검거확률을 분석하였다. <표 4-19>에서 알 수 있듯이 하위 10%와 10%-20%에 해당하는 검거가능지수는 0점과 1점이다. 0점과 1점의 검거가능지수가 부여된 사건의 실제 검거확률은 0%이다. 0점과 1점의 사건들은 한건도 검거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누적백분비가 21%-30%, 31%-40%인 검거가능지수의 실제 점수는

2-3점과 4-7점이었다. 이러한 경우의 검거확률은 각각 4.6%와 2.9%로 역시 검거할

---

[Http://www.hendonpub.com/lawandorder/magazine/june98/communityinvolvement.html.htm](http://www.hendonpub.com/lawandorder/magazine/june98/communityinvolvement.html.htm)  
: St. Clair County Sheriff's Department, [Http://www.sheriff.co.st-clair.us/invest.htm](http://www.sheriff.co.st-clair.us/invest.htm):  
Greenville Police Department, Management Study,  
[Http://www.ci.greenville.tx.us/pdsummary.html](http://www.ci.greenville.tx.us/pdsummary.html): The City of Leominster, Massachusetts,  
Police Department Study, [Http://ci.leominster.ma.us/polstdy.htm](http://ci.leominster.ma.us/polstdy.htm)

41) 수사미개시 결정에 의해 제기되는 피해자문제에 대해서는 Karmen, Andrew, Crime Victims(2nd),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0, pp. 169-170을 참조.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반면에 누적백분비가 41%~50%인 경우에 실제 검거가능지수는 8~14점이었으며 이때의 검거확률은 88.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의 경우도 검거가능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검거확률은 대체로 8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검거가능지수의 누적백분비가 71%~80%, 81%~90%, 상위 10%인 경우에 검거확률은 95.8%, 98.3%, 98.6%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거가능지수가 8점 이상이었을 때에 80%이상의 검거확률이 있으며, 8점 미만이었을 때는 검거확률이 5%미만으로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지극히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거가능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건당 95건 이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한다. 검거가능지수가 7점 이하인 경우에는 검거확률이 100건당 5건 이하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다. 물론 5%의 검거확률에 대해서도 수사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5%의 확률을 위해 숫적으로 부족한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이들의 업무하중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검거확률이 높은 사건들에 배당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과학적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표 4-19> 검거가능지수별 검거확률

범 위	검거가능지수	누 적 빈 도	검 거 확 률
하위 10%	0 점	90	0%
10%~20%	1 점	110	0%
21%~30%	2~3 점	154	4.6%
31%~40%	4~7 점	224	2.9%
41%~50%	8~14 점	277	88.7%
51%~60%	15~26 점	333	82.1%
61%~70%	27~34 점	397	85.9%
71%~80%	35~37 점	445	95.8%
81%~90%	38~40 점	503	98.3%
상위 10%	41~46 점	572	98.6%

## 제5절 피의자 검거가능기간의 추정

특정범죄에 대한 검거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사인력의 효율적 배당이나 수사부서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살인강도를 예로 들어 관할구역에서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만일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면 수사책임자는 이를 바탕으로 기간별 수사활동에 필요한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사부서의 업무성과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검거건수와 미검거건수로 평가하는 것보다 특정범죄별로 검거가능기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간내에 검거한 사건에 따라 업무를 평가한다면 이는 업무내용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될 것이다.

검거가능기간이란 특정범죄를 해결하는 데에 수사경찰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사기간이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범죄들을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거가능지수는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해결난이도란 측면에서 서열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20>은 본 연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한 결과이다.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개별사건들에 대하여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사건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검거가능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3등급하였다. <표 4-20>에서 '낮다'로 분류된 사건들은 사건들의 검거가능지수가 평균 검거가능지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들이다. '중간'으로 분류된 사건들은, 평균 검거가능지수보다 지수치가 높은 사건들만을 대상으로 구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값보다는 크지만 집단 평균값보다 적은 경우이다. '높다'로 분류된 사건들은 집단 평균값보다 검거가능지수가 큰 경우들이다. 실제 '낮다'로 분류된 사건들의 검거가능지수는 0점에서 20점, '중간'으로 분류된 사건들은 21점-36점, '높다'는 36점 이상이였다.

검거가능지수별로 집단을 분류한 후에 집단별 평균 검거기간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낮다'로 분류된 사건들의 평균 검거기간은 12.3일, '중간'의 경우는 9.8일, '높다'로 분류된 사건들의 평균 검거기간은 3.1일로 가장 짧았다. 검거가능지수가 높은 사건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므로 이들의 평균 검거기간이 짧았을 것이다. 평균 검거기간은

보통의 수사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기간이므로 검거가능지수가 0점-20점인 경우에 검거가능기간은 12.3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1점-36점이면 9.8일로, 37점-46점의 검거가능기간은 3.1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20> 검거가능지수별 평균 검거기간

검거가능지수	사 건 수	평균 검거기간
낮다 (0~20점)	8/8	12.3일
중간 (21~36점)	94	9.8일
높다 (37~46점)	141	3.1일

주: 1999년 12월 31일 현재 미검거사건은 제외하였다.

## 제6절 수사부서의 업무평가모형 개발

검거가능지수와 검거가능기간은 사건해결의 난이도와 평균적 검거기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여 수사경찰 개인이나 수사부서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21>은 검거가능지수와 검거가능기간을 사용하여 수사경찰의 업무를 평가한 사례를 도표화한 것이다. 업무평가는 검거가능지수별로 추정된 검거가능기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가점(plus point)을 부여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점(minus point)을 부여하여 실시하였다. <표 4-21>에서 사건수란 수사경찰 개인이 1999년 1분기 중에 처리한 5대 범죄사건의 수이다. 검거가능지수는 처리한 사건들의 평균 검거가능지수이다. 기간내검거는 검거가능기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의 수를 표시하며, 기간외검거란 검거는 했지만 검거가능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해결한 사건의 수를 표시한다. <표 4-21>의 개인 5를 예로 들어, 이 사람은 1999년도 1분기 동안에 7건의 5대범죄사건을 처리했으며 처리한 사건들의 평균 검거가능지수는 33.7였고, 자신이 처리한 7건 중에서 검거가능기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 6건이었고 이후에 검거

한 것이 1건이었다.

<표 4-21>에서 개인1에서 개인9는 실제 사건을 처리한 수사경찰들의 업무기록이며 가상10은 검거가능지수에 의한 업무평가의 의의를 예시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현행의 업무평가제도에 의하면 개인2와 가상10은 자신들이 담당한 14건 모두에서 피의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평가받는다. 그러나 검거가능기간을 고려하면 개인2는 14건 중에서 11건을 기간내에 해결했고 3건을 기간내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8건에는 플러스점수를 받고, 3건은 마이너스점수를 받아 업무평가점수는 0.6점(8점/14건)이다. 반면에 가상10은 기간내에 8건을 해결하고 기간외에 6건을 해결하여 업무평가점수가 0.1점(2점/14건)이 된다. 이를 통하여 검거가능기간에 의한 업무평가는 단순히 해결건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무의 내용까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 검거가능점수와 검거가능기간에 업무평가

구 분	사 건 수	검거가능 지수	기간내검 거 (건당+1)	검거구분 시간외 검거 (건당-1)	평 가	점 수
개인 1	12	37.6	9	3	6/12	0.5
개인 2	14	29.6	11	3	8/14	0.6
개인 3	2	12.0	1	1	0/20	
개인 4	22	30.5	17	5	12/22	0.5
개인 5	7	33.7	6	1	5/7	0.7
개인 6	16	32.7	14	2	12/16	0.8
개인 7	8	37.3	7	1	6/8	0.8
개인 8	5	37.2	3	2	1/5	0.2
개인 9	18	34.7	17	1	16/18	0.9
가상10	14	29.9	8	6	2/14	0.1

그러나 <표 4-21>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별로 할당되는 사건의 수나 사건들의 해결 난이도가 개인별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되었던 경찰서에서 검거가능기간과 검거가능기간을 통하여 업무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 개인1의 경

우에 처리한 사건의 평균 검거가능지수는 37.6점이고 개인3이 처리한 사건의 평균 검거 가능지수는 12.0이다. 개인1은 해결이 쉬운 사건들을 주로 처리했으며 개인3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만을 처리해야 했다. 기간내검거에 플러스1점을 부여하고 기간외검거에 마이너스1점을 부여하면 개인1의 평가점수는 0.5점이고 개인3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계산된다. 개인1이 원래 해결하기 쉬운 즉 검거가능지수가 높은 사건들만을 담당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평가점수만을 비교하여 개인1이 개인3보다 업무성과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거가능점수와 검거가능기간에 의한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처음부터 검거가능점수에 따른 공평한 사건배당을 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부서에서 미제사건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피의자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미국경찰은 검거가능지수에 j 기초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고 이를 통하여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sup>42)</sup> 뿐만 아니라 피해자신고의 접수후에 검거가능지수가 수사착수의 범위에 들지 못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함으로써 사건미해결로 인한 시민들의 실망감을 줄이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다. 1995년부터 미국 보스턴경찰국이 활용하는 DCM(Detective Case Management)은 검거가능지수의 도입을 통하여 경찰수사활동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보스턴경찰국은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수사항목의 전산처리와 컴퓨터네트워크의 구축에 기초한 DCM을 개발하여 수사경찰의 업무관리(time management), 사건처리관리(case tracking), 증거자료관리(tracking of evidence), 수사경찰간의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43)</sup>

우리나라도 검거가능지수를 도입한다면 미제사건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합리적 기

42) 물론 수사개시여부는 검거가능지수에만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를 유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경찰에서는 살인, 성폭력, 강도, 미화 10,000\$ 이상의 고액절도와 같은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비록 산출된 검거가능지수의 점수가 낮더라도 수사를 착수한다 (Harris, Ron: Investigative Services, 1999: [Http://www.abilene.com](http://www.abilene.com)).

43) Boyle, J. P. and Liz Clapp O'Connor, Boston Police Department, 1999, "Detective Case Management - How to make it work for your department", [Http://www.iacptechnology.org](http://www.iacptechnology.org).

보스턴경찰국에서 DCM을 도입하였을 때에 발생했던 문제중의 하나는 DCM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수사경찰이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산입력해야 하는데 수사경찰의 가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전산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보스턴경찰국은 자료입력원(data-entry clerks)들을 배치함으로써 전산입력의 기피문제를 해결했으며, 특히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이나 DCM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전산입력이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자료입력을 보조할 수 있는 체제(data support system)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였다.

준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사인력의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검거가능기간과 결합함으로써 수사부서의 객관적 업무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거가능지수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수사착수에 관한 현행 법규와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검토했으며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수사실무부서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거가능지수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검거가능지수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정책사항들을 제안한다.

## 제1절 요약

### 1) 수사착수와 미제사건 처리에 관한 현행 법규

먼저 현행 법규에서 수사착수의 기준이나 미제사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찾아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엔 사건의 해결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은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의 사정을 판단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착수에 대하여 다소의 유보조향을 두고 판단의 여지를 허용하지만 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제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동규칙은 사건이 “전혀 검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혹은 “앞으로도 검거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등으로 검거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2) 활용가능한 수사기초자료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시관계, 범행장소,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혹은 참고인에 관한 상세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미국경찰에서 작성하는 사건보고서는 1)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2)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분, 3) 재산피해 부분, 4) 용의자부분, 5) 피검자부분, 6) 목격자부분, 7) 기타 범죄상황, 자동차등록, 범인의 동작특징 등이 기재되어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활용되고 있다. 사건보고서는 범죄의 최초인지자가 사건현장에서 작성하고 담당수사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를 인계한다. 인계받은 수사담당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보완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수사책임자는 컴퓨터에 입력된 사건보고서를 전산처리하여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고 수사착수여부, 수사에정기간, 수사인력의 규모 등을 결정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수사기초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범죄사건에 대해서 발생통계원보,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피해신고서 등이 작성되고 있지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생통계원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작성되고 또한 수사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료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발생통계원표는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항목의 대부분이 자료관리를 위한 목적이거나 단순통계보고를 위한 것이며, 검거가능지수 산출에 활용하기에는 항목구성이 상세하지 않다. 침입절도의 경우에 침입방법, 침입수단, 도주로 등 범행수법에 관한 항목은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발생통계원표에는 이를 단순히 침입절도로 기재함으로써 수사기초자료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수법원지는 범행수법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지만, 검거된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수법범죄에 대해서만 작성되기 때문에 검거가능지수 산출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피해통보표의 경우도 범죄수법이나 피해상황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수법범죄에 대해서만 작성된다는 문제와 범행의 일시관계, 범행의 장소관계, 목격자 혹은 참고인관계 등에 관한 항목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신고서는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에 대해서만 작성되기 때문에 작성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항목이 전산화

코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3) 연구결과

검거가능지수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앞서 미국경찰의 사건보고서에서와 같이 1)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2)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분, 3) 재산피해부분, 4) 용의자부분, 5) 피검자부분, 6) 목격자부분, 7) 기타 범죄상황, 자동차등록, 범인의 동작특징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사기초자료가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발생통계원표와 범죄사건부를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발생통계원표를 통하여 수집된 항목들은 범죄발생후 인지기간, 피의자수, 피의자 연령, 범죄수법, 범행장소, 범행시간, 범행요일, 피해자수, 피해양상 등이다. 범죄사건부를 통해서도 검거여부, 사건발생후 검거까지의 검거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은 기초분석, 검거 유관항목 분석, 항목별 사건해결 기여도 분석 등의 단계를 거쳐 구성되었다.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은 12개 정보요인과 정보요인별 수정가중치를 포함한다. 검거가능지수를 실제 수사착수여부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건의 정보요인에 따라 수정가중치들을 부여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사건해결 난이도를 추정할 수 있다. 12개의 정보요인은 범죄발생후 인지기간이 2일 이내, 단독범행의 확인, 다수범행의 확인, 신체피해의 발생, 표출적 폭력행사, 도구적 폭력행사, 단독주택의 범죄, 상가지역의 범죄, 유흥시설지역의 범죄, 다수피해자 발생, 새벽시간의 범죄, 심야시간의 범죄 등이다. 정보요인별 수정가중치는 신체피해의 발생이 12점으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의 범죄와 새벽시간의 범죄가 1점으로 가장 낮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검거가능지수의 합치도는 81% 수준이었다. 절도범죄를 대상으로 산출한 검거가능지수의 합치도가 높았고 반면에 폭력범죄의 경우엔 합치도가 낮았다. 검거가능지수별로 검거확률을 계산했을 때에 검거가능지수가 8-14점이었을 때에 검거확률은 88.7%이었고, 반면에 4-7점이었을 때에는 2.9%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수사를 착수하기 위한 최소 검거가능지수를 8점으로 제안하였다. 더불어 검거가능지수별 검거가능기간을 추정한 결과 특정사건의 검거가능지수가 0-20점이면 검거가능기간이

12.3일이고, 21-36점이면 9.8일, 37-46점이면 검거가능기간이 3.1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더라도 검거가능기간내에 이루어졌으면 수사경찰이 우수한 수사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면에 검거가능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면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검거가능지수와 검거가능기간을 활용하여 수사경찰의 업무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수사부서의 사건배당이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이 편중되어 배당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검거가능기간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플러스점을 부과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 검거한 경우에는 마이너스점을 부과하였을 때에 검거건수로 업무평가를 할 때보다 업무내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으로써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 4) 연구의 한계

검거가능지수는 이를 통하여 수사경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건의 해결가능성을 사전에 통고함으로써 사건미해결로 인한 피해자의 실망감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활용가능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정의 경찰서에서 1999년 1분기에 접수한 범죄사건들을 분석대상으로 발생통계원표와 범죄사건부를 중심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자료자체의 문제와 자료수집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 수사실무에 활용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가 내포하는 문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 ㉠ 자료자체의 문제

검거가능지수는 수사개시단계에서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사담당부서에서 전산입력하는 발생통계원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항목들의 기재가 흔히 누락되기 때문에 발생통계원표에 기초하여 산출된 본 연구의 검거가능지수는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생통계원표는 원칙적으로 수사담당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의무경찰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이 발생통계원표를 기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요인이 수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전달상의 문제로 누락되었을 수 있다. 기재누락은 수사항목별 사건기여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항목의 기여도 추정에 오류를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항목별 기여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정가중치의 값이 잘못 추정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발생통계원표의 기재항목이 부실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검거가능지수의 활용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범죄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초자료를 이용했을 때에 신뢰성있는 검거가능지수 산출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에 활용가능한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 범죄수법, 목격자 혹은 참고인의 확보유무 등 사건해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는다. 신뢰성있는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앞으로 범죄통계원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는가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발생통계원표를 바탕으로 검거가능지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범죄수법, 목격자 부문과 관련한 정보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같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정보요인이 산출모형에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검거가능지수를 수사실무에 직접 활용하는데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 자료수집과정상의 문제

자료수집과정에서 신뢰성있는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지역적 특성이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수집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의 제약과 자료협조문제로 인하여 특정경찰서만을 대상으로 1999년도 1분기에 발생한 범죄사건을 통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이나 여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수집된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료추적기간이 짧아 미검거사건이 실제 이상으로 과다반영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12월까지 종료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

료추적기간이 1999년 1분기에 발생한 범죄사건들 중에서 1월에 발생한 사건은 11개월, 3월에 발생한 사건은 8개월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2월 이후에 검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사례는 미검거로 분류되었다. 검거된 사건이 미검거로 분류되었다면 수사항목별 사건해결 기여도나 수정가중치의 추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활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거가능지수의 산출 모형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요인을 파악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수사착수에 필요한 수정가중치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거가능지수의 산출 모형은 앞서 지적한 활용가능한 자료자체의 문제와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한계들로 인하여 수사실무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검거가능지수를 수사실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용가능한 수사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차후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출모형에 대한 경험적 검증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정책제언

검거가능지수는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수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미제사건의 경우에 처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검거가능기간과 결부하여 객관적으로 수사경찰이나 수사부서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유형별로 어떤 수사항목이 사건해결에 기여도가 높은 정보요인인가를 규명함으로써 차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중점수사사항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수도 있다. 검거가능지수는 또한 경험적 자료와 통계적 예측방법을 통해 수사활동에 기여하는 것임으로 수사경찰관들에게 과학적 수사활동의 의의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검거가능지수는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음은

검거가능지수를 수사활동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 선행되어야할 정책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 1) 수사관련 법규의 정비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현실적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모든 사건에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검거가능지수를 통하여 사건해결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희박한 경우에도 수사착수를 해야 한다. 해결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착수되었을 때는 수사인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미제사건이 양산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수사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수사착수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앞으로도 검거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미제사건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범죄수사규칙의 경우도 검거가능지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를 수사지속여부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통합발생원표의 도입

수사부서에서 검거가능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수사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 수사관련 기초자료는 현재 발생통계원표, 수범원지, 피해통보표 등에 분산기재되고, 작성대상이 서로 달라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범죄사건에 대한 기본정보는 발생통계원표에 기재되어 있고, 검거된 피의자의 수범범죄에 대한 범행수범은 수범원지에, 수범범죄 중에서 검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상황은 피해통보표 등에 분산되어 기재되고 있다. 이에 자료를 작성하는 수사경찰은 동일내용을 여러 양식에 반복해 기재해야 하는 불편감을 겪고 있으며 사건개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어렵다. 발생통계원표, 수범원지, 피해통보표를 단일양식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발생통계원표에 수범원지와 피해통보표의 내용을 보완시켜 통합시켰을 때에 이를 통하여 수사부서는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하는 등 수사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의 설치

수사착수 이후에 수사경찰은 현장관찰,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수사자료를 수집한다. 통합발생원표가 도입되더라도 수사경찰이 근거리통신망에 접속하여 잘못된 기재사항을 수정하고 새로이 수집된 자료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이 근거리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다면 기초자료의 수정보완은 물론이고, 미제사건의 판별에 검거가능지수를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근거리통신망의 설치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에 의한 발생통계원표 혹은 통합발생원표의 신뢰성 제고 뿐만 아니라 검거가능지수와 같은 과학적 수사방법의 도입을 위해서도 필수적일 것이다.

### 4) 자료입력 보조체제(Data Support System)의 활용

보스톤경찰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수사착수시점이나 수사진행과정에서 수사관련정보를 직접 전산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검거가능지수의 산출을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입력이 필수적이므로 수사경찰을 도와 자료입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스톤경찰국은 수사기초자료의 입력에서부터 수사진행 중에 수집되는 증거물 확보유무, 증언 획득여부 등에 관한 자료입력을 입력보조원(data-entry clerk)에 의뢰함으로써 정확한 전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 5) 검거가능지수 적용범죄의 분류

검거가능지수는 범죄사건의 현실적인 해결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거나 미제사건으로 분류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사부서는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인력의 업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연쇄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과 같이 심각한 범죄사건은 피의자 검거를 원하는 사회성원의 요구

가 강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거가능지수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아비레니(Abilene) 경찰국은 사회성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살인, 성폭력, 강도, 고액절도 등은 비록 검거가능지수가 낮더라도 미제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신에 범죄피해가 심각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피의자 신원확인여부, 증인의 존재여부, 물리적 증거의 존재여부, 유류품의 추적가능성을 통하여 검거가능지수를 산출해 수사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검거가능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사부서의 기대효과와 사회성원의 요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검거가능지수의 적용대상 범위를 사전에 분류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대학교, 범죄수사론, 1996.
- 경찰청, 경찰훈령·예규집(형사).
- 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재비행 예측에 관한 연구.
- 김기두, 한국소년범죄연구, 박영사.
- 김준호·이동원,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백형구,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육법사, 1985.
- 성광호, 범죄수사의 이론과 실제, 진리탐구, 199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1.
- 이백철·한병락·이강덕, 경찰범죄통계의 신뢰성제고 방안, 치안연구소, 1995.
- 이상안, 범죄심리학, 박영사, 1994.
- 전용득, 수사기법강해, 세종출판사, 1996.
- Bozza, Charles M., Criminal Investigation, Nelson-Hall: Chicago, 1978, pp. 238-231.
- Burgess, E.W., "Factors determining success or failure on parole", in A.A. Bruce et al.(ed), The Workings of the Indeterminate-Sentence Law and the Parole System in Illinois, Springfield.
- Glueck, S. & E. Glueck.,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 195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ville Police Department Management Study, [Http://www.ci.greenville.tx.us/pdsummary.html](http://www.ci.greenville.tx.us/pdsummary.html):
- Kinne, Kevin B., Practical Investigation Technique, CRC press, 1994.

Mannheim, H. & L.T.Wilkins., Prediction Models in Relation to Bortal Training, 1955.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Miller, C., Anatomy of a citizen's complaint, Citizen's Advocate, 1996.

Myren, Richard A & Carol Henderson Carcia

Inves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Fac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St. Clair County Sheriff's Department

[Http://www.sheriff.co.st-clair.us/invest.htm](http://www.sheriff.co.st-clair.us/invest.htm)

Swope, Ross E.,

Community Involvement in Reducing Property Crime,

[Http://www.hendonpub.com/lawandorder/magazine/june98/communityinvolvement/html.htm](http://www.hendonpub.com/lawandorder/magazine/june98/communityinvolvement/html.htm).

The City of Leominster, Massachusetts.

Police Department Study, [Http://ci.leominster.ma.us/polstdy.htm](http://ci.leominster.ma.us/polstdy.htm)

Witte, A.D. & P. Schmidt.

“An analysis of Recidivism, Using the Truncated Lognormal Distribution“, 1977, Applied Statistics, pp. 302-311.